

목 차

정 정 신 고 (보 고)	1
투 자 설 명 서	45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46
【 본 문 】	47
요약정보	47
1. 핵심투자위험	47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0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53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53
1. 공모개요	53
2. 공모방법	54
3. 공모가격 결정방법	56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66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74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76
III. 투자위험요소	78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98
V. 자금의 사용목적	108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14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117
I. 회사의 개요	117
1. 회사의 개요	117
2. 회사의 연혁	118
3. 자본금 변동사항	119
4. 주식의 총수 등	122
5. 의결권 현황	122
6. 배당에 관한 사항	123
II. 사업의 내용	124
III. 재무에 관한 사항	137
1. 요약재무정보	137
2. 연결재무제표	137
3. 연결재무제표 주식	137
4. 재무제표	137
5. 재무제표 주식	140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149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151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52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152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158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60
VI. 주주에 관한 사항	162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65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165
2. 임원의 보수 등	168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169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70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1
【 전문가의 확인 】	174
1. 전문가의 확인	174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174

정정신고(보고)

2017년 05월 2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투자설명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4월 21일
3. 정정사유 : 모집주식수 변경 및 공모가액 확정에 따른 기재사항 정정
4. 정정사항

* 금번 정정신고서 상의 정정사항은 굵은 파랑색 글씨체로 기재하였습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공통정정사항	- 모집(매출)가액 예정 : 2,000원 - 모집(매출)가액 총액(예정) : 10,000,000,000원 - 공모희망가액 : 2,000원	- 모집(매출)가액 (확정) : 2,000원 - 모집(매출)가액 총액 (확정) : 8,000,000,000원 - 공모 (확정) 가액:2,000원
<요약정보>	※ 요약정보의 모든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의 정정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였으므로, 본 정정표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요약정보의 정정사항은 아래 본문 정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공모개요	(주1)	(주1)
2. 공모방법	(주2)	(주2)
3. 공모가격 결정방법	(주3)	(주3)
	(주4)	(주4)
	(주5)	(주5)
	(주6)	(주6)
	기재사항 추가	(주7)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주8)	(주8)
	(주9)	(주9)
	(주10)	(주10)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주11)	(주11)
Ⅲ. 투자위험요소		
2. 회사위험 가.	(주12)	(주12)
2. 회사위험 마.	(주13)	(주13)
2. 회사위험 차.	(주14)	(주14)
3. 기타위험 가.	(주15)	(주15)
3. 기타위험 다.	(주16)	(주16)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1. 평가기관	(주17)	(주17)
3.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주18)	(주18)
	(주19)	(주19)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주20)	(주20)
2. 자금의 사용목적	(주21)	(주21)
	(주22)	(주22)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예치자금의 지급	(주23)	(주23)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주24)	(주24)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주25)	(주25)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재현황 등 그 밖의 사항	(주26)	(주26)
	(주27)	(주27)

(주1)

[정정전]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5,000,000	100	2,000	10,0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화투자증권(주)	기명식보통주	5,000,000	10,000,000,000	35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5.29 ~ 2017.05.30		2017.06.01	2017.05.26	2017.06.01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희망가액")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이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 결정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주4)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청약일은 2017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이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본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17년 03월 1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3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급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6) 상기 인수대가는 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이며 상기 금액의 50%는 금번 일반공모의 주금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7) 본 공모 결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총 발행주식은 6,800,000주(전환사채 전액 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1,8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약 1,735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265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3.24%입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5,000,000	73.53%	1,800,000	26.47%	2,000	1,735	13.24%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 공모주식수)
-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정정후]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4,000,000	100	2,000	8,0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화투자증권(주)	기명식보통주	4,000,000	8,000,000,000	35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5.29 ~ 2017.05.30	2017.06.01	2017.05.26	2017.06.01	-
----------------------------	------------	------------	------------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확정**가액")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확정**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합의하여 1주당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청약일은 2017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이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본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17년 03월 1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3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6) 상기 인수대가는 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이며 상기 금액의 50%는 금번 일반공모의 주금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7) 본 공모 결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총 발행주식은 **5,800,000주**(전환사채 전액 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1,8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약 **1,685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315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5.75%**입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4,000,000	68.97%	1,800,000	31.03%	2,000	1,685	15.75%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확정**가액 × 공모주식수)

* 희석비율 = (공모 **확정**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 **확정**가액

(주2)

[정정전]

2. 공모방법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공모	5,000,000주	100%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청약자	1,000,000주	20%
기관투자자	4,000,000주	80%
합계	5,000,000주	100%

[공모 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000,000주(20%)	2,000원	2,000,000,000원	-
기관투자자	4,000,000주(80%)		8,000,000,000원	-
합계	5,000,000주(100%)		10,000,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4의2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③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최종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주4)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합니다.

[정정후]

2. 공모방법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공모	4,000,000주	100%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청약자	1,365,000주	34.12%
기관투자자	2,635,000주	65.88%
합계	4,000,000주	100%

[공모 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365,000주(34.12%)	2,000원	2,730,000,000원	-
기관투자자	2,635,000주(65.88%)		5,270,000,000원	-
합계	4,000,000주(100%)		8,000,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4의2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 ③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최종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공모가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주4) 모집총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하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협의하여 공모주식수를 5,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3)

[정정전]

주4) 주당공모가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할 예정입니다.

주5)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정된 가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후]

주4) 주당공모가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주5) 모집총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정정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4,000,000주	80%	-

주1) 상기비율은 공모주식수 5,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20%는 수요예측 참여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정정후]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2,365,000주	65.88%	-

주1) 상기비율은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34.12%는 수요예측 참여대상주식이 아닙니다.

(주5)

[정정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공모희망가액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주3) 공모희망가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 **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 확정 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 하였습니다 .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주1) 상기 공모 **확정**가액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2)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 **확정**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하였습니다**.

주3) 공모 **확정**가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6)

[정정전]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신청수량 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참여수량 × 신청 가격) 단, 수요예측 대상 주식 4,000,000주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 규모, 기관투자자의 성격,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정정후]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신청수량 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참여수량 × 신청 가격) 단, 수요예측 대상 주식 2,365,000주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 규모, 기관투자자의 성격,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7)

[정정후]

수요예측 결과

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내역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단순경쟁률
31	2,884,000	1.09 : 1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2,000원	31	2,884,000	100.00%
2,000원 미만	-	-	-
합계	31	2,884,000	100.00%

(주8)

[정정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한도]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	1,000,000주	100,000주	100%

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0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한화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2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5,000주
50,000주 초과~100,000주 이하	10,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접수한 한화투자증권(주)에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7년 05월 29일~30일 08:00~17: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7년 06월 01일 08:00~12: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4,000,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정정후]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한도]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	1,365,000주	130,000주	100%

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한화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2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5,000주
50,000주 초과~130,000주 이하	10,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수요예측을 접수한 한화투자증권(주)에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7년 05월 29일~30일 08:00~17: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율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7년 06월 01일 08:00~12: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2,635,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주9)

[정정전]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의 배정비율

구분	비율	배정 주식
기관투자자	80.00%	4,000,000주
일반청약자	20.00%	1,000,000주
합계	100.00%	5,000,000주

-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 주2)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3)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 (가)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나)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 (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한화투자증권(주)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취급처		배정주식수	배정기준	공고방법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	1,000,000주	주)	본·지점 및 홈페이지

주1)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은 추첨

[정정후]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공모주식의 배정비율

구분	비율	배정 주식
기관투자자	65.88%	2,635,000주
일반청약자	34.12%	1,365,000주
합계	100.00%	4,000,000주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주2)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주3)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가)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나)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한화투자증권(주)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취급처		배정주식수	배정기준	공고방법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	1,365,000주	주)	본·지점 및 홈페이지

주1)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은 추첨

(주10)

[정정전]

가. 모집 또는 매출일정 등에 관한 사항

항목	내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000원 / 주1)
	확정가액	-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0,000,000,000원
		확정가액	-
청약단위			주2)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100.0%
배정 공고			2017년 06월 01일
납입기일			2017년 06월 01일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정정후]

가. 모집 또는 매출일정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000원	
	확정가액	2,000원 /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0,000,000,000원	
	확정가액	8,000,000,000원	
청약단위			주2)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100.0%
배정 공고			2017년 06월 01일
납입기일			2017년 06월 01일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확정**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11)

[정정전]

주2)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정정후]

주2)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확정**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주12)

[정정전]

2. 회사위험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충족	-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51억 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 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11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

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10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7.63%)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정정후]

2. 회사위험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에 예치, 신탁할 것	충족	-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 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51억 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주13)

[정정전]

코스닥 상장규정	총족여부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기업규모)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총족 가능 (100억원 공모 예정)
제7조의3 제1항 제2호 (주식의 분산)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인 이상"은 각각 "200인 이상"으로 한다.	총족 가능 (73.53% 공모 예정)
제7조의3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총족 가능 (100억원 공모시 7.63%)

[정정후]

코스닥 상장규정	총족여부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기업규모)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총족 가능 (80억원 공모 예정)
제7조의3 제1항 제2호 (주식의 분산)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인 이상"은 각각 "200인 이상"으로 한다.	총족 가능
제7조의3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총족 가능 (80억원 공모시 9.18%)

(주14)

[정정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기주주들은 당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모 후 지분율은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 26.47%이며, 향후 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목적인 합병에 관하여 핵심 역할을 담당할 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 합병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정정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기주주들은 당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모 후 지분율은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 **31.51%**이며, 향후 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목적인 합병에 관하여 핵심 역할을

담당할 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 합병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주15)

[정정전]

가.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13.24% 수준입니다.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받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3.24% 수준입니다. 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격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5,000,000	73.53%	1,800,000	26.47%	2,000	1,735	13.24%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액 × 공모주식수)
- * 희석비율 = (공모희망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희망가액

[정정후]

가.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4,000,000주, 주당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15.75% 수준입니다.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받기주주

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4,000,000주, 주당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75% 수준입니다.** 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격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4,000,000	68.97%	1,800,000	31.03%	2,000	1,685	15.75%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확정**가액 × 공모주식수)
- * 희석비율 = (공모**확정**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확정**가액

(주16)

[정정전]

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440,000주 중 91.91%에 해당하는 5,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440,000주 중 91.91%에 해당하는 5,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정정후]

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440,000주 중 90.09%에 해당하는 4,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440,000주 중 90.09%에 해당하는 4,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주17)

[정정전]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 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주를 총액인수,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정관, 재무상태표 및 최근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전문성, 합병대상 산업군의 산업동향,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정정후]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 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를 총액인수,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정관, 재무상태표 및 최근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전문성, 합병대상 산업군의 산업동향,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주18)

[정정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정후]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 확정 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19)

[정정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희망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은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전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공모예정가액(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사와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공모가 현황]						
(단위: 원)						
구분	액면가	발행가		공모가 배수 (주1)	공모금액 (백만원)	희석률 (주2)
		공모전	공모시			
대우증권그린코리아	1,000	1,000	3,500	3.5배	87,500	16.7%
미래에셋제1호	500	500	1,500	3.0배	20,000	12.2%
현대드림투게더	100	2,000	6,000	3.0배	20,000	16.3%

동양밸류오션	500	5,000	10,000	2.0배	45,000	9.1%
우리1호	5,000	5,000	10,000	2.0배	35,000	11.1%
신한제1호	100	2,000	5,000	2.5배	37,500	12.6%
히든챔피언제1호	1,000	1,000	2,000	2.0배	30,000	12.9%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	500	500	1,000	2.0배	19,700	5.8%
한화SV명장제1호	100	2,000	5,000	2.5배	20,000	12.0%
대신증권그로스알파	1,000	1,000	2,000	2.0배	20,000	14.6%
SBI&솔로몬드림	500	500	1,250	2.5배	22,500	14.3%
한국투자신성장1호	200	1,000	2,200	2.2배	23,100	13.7%
교보KTB	100	2,000	4,000	2.0배	25,000	14.8%
HMCIB제1호	100	1,000	2,000	2.0배	23,560	11.5%
이트레이드1호	100	1,000	2,000	2.0배	19,000	13.5%
키움제1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9.9%
부국퓨처스타즈	500	1,000	2,000	2.0배	11,800	17.6%
하나그린	100	2,000	4,000	2.0배	20,000	8.4%
하이제1호	500	2,000	4,000	2.0배	27,000	9.1%
동부티에스블랙펄	100	1,000	2,000	2.0배	22,500	9.1%
IBKS스마트SME	500	500	1,000	2.0배	20,000	9.0%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	100	1,000	2,500	2.5배	20,000	12.0%
우리기업인수목적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키움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5,000	11.8%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4,800	12.8%
유진기업인수목적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5,000	14.3%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9.35%
신한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500	11.1%
교보위드스팩	100	1,000	2,000	2.0배	7,800	18.05%
현대에이블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1.24%
유안타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1,000	13.35%
IBKS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KTB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이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국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5%
동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나머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2.12%
우리에스엘스팩	100	1,000	2,000	2.0배	4,000	16.70%
엘아이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5,000	14.30%

교보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7.11%
하나머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4,500	15.40%
현대드림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케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30,000	12.50%
NH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540	12.74%
골든브릿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7,000	11.96%
에스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0,000	14.80%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8,000	19.70%
케이티비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화에이스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8,200	15.25%
하나머스트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6.9%
유진에이씨피씨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에스비아이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7.6%
한화엠지아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대우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미래에셋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400	10.96%
한화에이씨피씨스팩	100	1,000	2,000	2.0배	13,500	13.51%
엔에이치스팩5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대신밸런스제1호스팩	100	1,250	2,000	1.6배	10,000	3.92%
하이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500	13.05%
엔에이치스팩7호	100	1,000	2,000	2.0배	8,400	13.8%
하나머스트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7,000	15.7%
이베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골든브릿지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800	12.71%
엔에이치스팩8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키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9.65%
유안타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2.50%
한화에이스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250	10.45%
SK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8%
엘아이지에이스스팩	100	1,000	2,000	2.0배	5,000	14.28%
케이비 제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10.94%
미래에셋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100	11.39%
교보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000	12.50%
현대드림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교보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200	13.05%
케이티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2,500	14.30%
한국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유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500	15.15%
엔에이치스팩9호	100	1,000	2,000	2.0배	15,500	12.20%
신영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동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300	14.55%
IBKS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이베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3.65%
현대드림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6%
키움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10.00%
에이치엠씨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0.00%
골든브릿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9%
하나금융7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4,000	11.11%
동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2.70%
대신밸런스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7.63%
케이비제9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7,000	9.09%
IBKS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3,500	12.75%
하이에이아이1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200	14.06%
미래에셋제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000	11.86%
한국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4%
교보비엔케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6.65%
하나금융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8.33%
케이비제10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스팩	100	1,000	2,000	2.0배	11,000	13.40%

주1)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주2) 공모주주 추가희석을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이에 시장상황 및 기타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모전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주주등의 투자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희망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투자증권(주)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모가 (2,000원)
희석비율	13.24%
가중평균 발행가	1,735원
총 납입금액	11,800,000,000원
총 발행주식수	6,800,000주

주1) 산식은 아래와 같음

▷ 희석비율= (공모희망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총납입금액÷총발행주식수(CB 전환 가정)

▷ 총납입금액=(공모전발행가×공모전발행주식수) + (CB행사가액×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

격 × 공모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공모주식수

[정정후]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희망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 확정 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공모**확정**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 적정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을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전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공모예정가액(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동사와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액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액을 제시하였습니

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공모가 현황]						
(단위: 원)						
구분	액면가	발행가		공모가 배수 (주1)	공모금액 (백만원)	희석률 (주2)
		공모전	공모시			
대우증권그린코리아	1,000	1,000	3,500	3.5배	87,500	16.7%
미래에셋제1호	500	500	1,500	3.0배	20,000	12.2%
현대드림투게더	100	2,000	6,000	3.0배	20,000	16.3%
동양밸류오션	500	5,000	10,000	2.0배	45,000	9.1%
우리1호	5,000	5,000	10,000	2.0배	35,000	11.1%
신한제1호	100	2,000	5,000	2.5배	37,500	12.6%
히든챔피언제1호	1,000	1,000	2,000	2.0배	30,000	12.9%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	500	500	1,000	2.0배	19,700	5.8%
한화SV명장제1호	100	2,000	5,000	2.5배	20,000	12.0%
대신증권그로쓰알파	1,000	1,000	2,000	2.0배	20,000	14.6%
SBI&솔로몬드림	500	500	1,250	2.5배	22,500	14.3%
한국투자신성장1호	200	1,000	2,200	2.2배	23,100	13.7%
교보KTB	100	2,000	4,000	2.0배	25,000	14.8%
HMCIB제1호	100	1,000	2,000	2.0배	23,560	11.5%
이트레이드1호	100	1,000	2,000	2.0배	19,000	13.5%
키움제1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9.9%
부국퓨처스타즈	500	1,000	2,000	2.0배	11,800	17.6%
하나그린	100	2,000	4,000	2.0배	20,000	8.4%
하이제1호	500	2,000	4,000	2.0배	27,000	9.1%
동부티에스블랙펠	100	1,000	2,000	2.0배	22,500	9.1%
IBKS스마트SME	500	500	1,000	2.0배	20,000	9.0%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앳캡스	100	1,000	2,500	2.5배	20,000	12.0%
우리기업인수목적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키움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5,000	11.8%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4,800	12.8%
유진기업인수목적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5,000	14.3%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9.35%
신한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500	11.1%
교보위드스팩	100	1,000	2,000	2.0배	7,800	18.05%
현대에이블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1.24%
유안타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1,000	13.35%
IBKS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KTB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이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국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5%
동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나머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2.12%
우리에스엘스팩	100	1,000	2,000	2.0배	4,000	16.70%
얼아이시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5,000	14.30%
교보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7.11%
하나머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4,500	15.40%
현대드림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케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30,000	12.50%
NH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540	12.74%
골든브릿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7,000	11.96%
에스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0,000	14.80%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8,000	19.70%
케이티비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화에이스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8,200	15.25%
하나머스트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6.9%
유진에이씨피씨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에스비아이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7.6%
한화엠지아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대우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미래에셋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400	10.96%
한화에이씨피씨스팩	100	1,000	2,000	2.0배	13,500	13.51%
엔에이치스팩5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대신밸런스제1호스팩	100	1,250	2,000	1.6배	10,000	3.92%
하이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500	13.05%
엔에이치스팩7호	100	1,000	2,000	2.0배	8,400	13.8%
하나머스트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7,000	15.7%
이베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골든브릿지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800	12.71%
엔에이치스팩8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키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9.65%
유안타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2.50%
한화에이스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250	10.45%
SK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8%
얼아이지이에스스팩	100	1,000	2,000	2.0배	5,000	14.28%

케이비 제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10.94%
미래에셋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100	11.39%
교보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000	12.50%
현대드림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교보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200	13.05%
케이티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2,500	14.30%
한국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유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500	15.15%
엔에이치스팩9호	100	1,000	2,000	2.0배	15,500	12.20%
신영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동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300	14.55%
IBKS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이베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3.65%
현대드림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6%
키움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10.00%
에이치엠씨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0.00%
골든브릿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9%
하나금융7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4,000	11.11%
동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2.70%
대신밸런스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7.63%
케이비제9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7,000	9.09%
IBKS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3,500	12.75%
하이에이아이1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200	14.06%
미래에셋제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000	11.86%
한국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4%
교보비엔케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6.65%
하나금융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8.33%
케이비제10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스팩	100	1,000	2,000	2.0배	11,000	13.40%

주1)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주2) 공모주주 추가희석률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이에 시장상황 및 기타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모전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주주등의 투자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 **확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 **확정**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투자증권(주)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모가 (2,000원)
희석비율	15.75%
가중평균 발행가	1,685원
총 납입금액	9,800,000,000원
총 발행주식수	5,800,000주

주1) 산식은 아래와 같음

- ▷ 희석비율= (공모희망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공모희망가격
- ▷ 가중평균발행가격= 총납입금액÷총발행주식수(CB 전환 가정)
- ▷ 총납입금액=(공모전발행가×공모전발행주식수) + (CB행사가액×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격×공모주식수)
-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공모주식수

(주20)

[정정전]

가. 자금조달금액

구분	금액
총 공모금액(1)	10,000,000,000
발행제비용(2)	230,000,000
순수입금 [(1)-(2)]	9,770,000,000

주) 총 공모금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확정공모가액이 결정되면 총공모금액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주선수수료(주1)	175,000,000	공모금액 X 3.5%
상장수수료	2,500,000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400,000	신규상장수수료
등록세	2,0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400,000	등록세의 20%
등기비용	6,000,000	증자 자본금의 1.2%
광고비용	10,000,000	-
기타비용	33,700,000	IR비용, 투자설명서 인쇄비등
합계	230,000,000	

주1) 신규상장 공모 후 인수수수료의 50%, 합병등기일 후 50% 수령 예정

주2) 발행제비용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정정후]

가. 자금조달금액

구분	금액
총 공모 금액(1)	8,000,000,000
발행제비용(2)	200,000,000
순수입금 [(1)-(2)]	7,800,000,000

주) 총 공모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주선수수료(주1)	140,000,000	공모금액 X 3.5%
상장수수료	2,500,000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400,000	신규상장수수료
등록세	1,6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320,000	등록세의 20%
등기비용	4,800,000	증자 자본금의 1.2%
광고비용	10,000,000	-
기타비용	40,380,000	IR비용, 투자설명서 인쇄비등
합계	200,000,000	

주1) 신규상장 공모 후 인수수수료의 50%, 합병등기일 후 50% 수령 예정

주2) 발행제비용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주21)

[정정전]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4.4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예치자금	10,000,000,000	공모자금의 100% 예치
계	10,000,000,000	

[정정후]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4.4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예치자금	8,000,000,000	공모자금의 100% 예치
계	8,000,000,000	

(주22)

[정정전]

나. 공모자금 사용방법

(1) 공모자금 예치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공모자금의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의 100%인 100억 원을 주권의 주금납입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된 자금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당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공모금액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설립자본금 4.4억원과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운영자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가능한 향후 3년 간의 예상 정상운영 및 외부 용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내역(주4)
설립비용	등기비용 등	15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사무실 세팅 등
스팩상장비용	인수수료	350	공모액 * 3.5%
	회계감사, 기장대리	45	감사 및 세무조정 : 연 1,200만원 * 3년 기장대리 : 연 300만원 * 3년
	상장수수료 등	30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스팩운영비용	임직원급여 (주2)	36	사외이사 연 600만원 * 3년 감사 연 600만원 * 3년
	기타 잡비	24	공시담당자 교육비 연간 100만원(3년) 결산공고비용 연간 80만원(3년) IR비용 등
스팩합병비용	기업실사비용	50	
	합병자문수수료	350	
	외부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수수료	100	(주1)
총 계		1,000	

주1)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습니다.
주2)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주3)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감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임원들에게는 상기 보수 외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등 기타 결제 가능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한도 증액시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운영자금의 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자금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 보고를 한 금액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 운영자금은 설립 자본 44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0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3)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03월 0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 100.0억원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치약정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 예정금액	10,0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정정후]

나. 공모자금 사용방법

(1) 공모자금 예치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공모자금의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의 100%인 **80억원**을 주권의 주금납입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된 자금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당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공모금액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설립자본금 4.4억원과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운영자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가능한 향후 3년 간의 예상 정상운영 및 외부 용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내역(주4)
설립비용	등기비용 등	15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사무실 세팅 등
스팩상장비용	인수수료	350	공모액 * 3.5%
	회계감사, 기장대리	45	감사 및 세무조정 : 연 1,200만원 * 3년 기장대리 : 연 300만원 * 3년
	상장수수료 등	30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스팩운영비용	임직원급여 (주2)	36	사외이사 연 600만원 * 3년 감사 연 600만원 * 3년
	기타 잡비	24	공시담당자 교육비 연간 100만원(3년) 결산공고비용 연간 80만원(3년) IR비용 등
스팩합병비용	기업실사비용	50	
	합병자문수수료	350	
	외부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수수료	100	(주1)
총 계		1,000	

주1)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습니다.
주2)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주3)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감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임원들에게는 상기 보수 외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등 기타 결제 가능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한도 증액시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운영자금의 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자금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 보고를 한 금액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 운영자금은 설립 자본 44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0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3)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03월 0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 100.0억원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치약정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 예정금액	8,0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주23)

[정정전]

라. 1주당 지급예상금액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
-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 예치이율 1.40% 가정

당사가 주권모집에 따른 납입기일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공모에 참여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1주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금액
예치자금(A)	10,000,000,000원
이자율(B)	1.4%
예치기간(C)	36개월
총 반환예정금액(D=A*(1+B)^3)	10,425,907,440
공모주식수(E)	5,000,000주
1주당 반환예정금액(F=D/E)	2,085 원

주) 상기 1주당 반환예정금액은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 및 36개월내 당사가 해산시에

다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정후]

라. 1주당 지급예상금액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
-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 예치이율 1.40% 가정

당사가 주권모집에 따른 납입기일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공모에 참여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1주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금액
예치자금(A)	8,000,000,000원
이자율(B)	1.2%
예치기간(C)	36개월
총 반환예정금액(D=A*(1+B)^3)	8,291,469,824
공모주식수(E)	4,000,000주
1주당 반환예정금액(F=D/E)	2,073 원

주) 상기 1주당 반환예정금액은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 및 36개월내 당사가 해산시에 다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4)

[정정전]

(2) 이사회회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 여부	참석
1	2017.02.28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정관 승인의 건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2	2017.03.03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5명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신고)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전환사채 발행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2	2017.03.09	사내규정 제정의 건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를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고
1	2017.02.28	1명 (1명)	발기인 총회
2	2017.03.03	1명 (1명)	이사회
3	2017.03.09	1명 (1명)	이사회

[정정후]

(2) 이사회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1	2017.02.28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정관 승인의 건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2	2017.03.03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5명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신고)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전환사채 발행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2017.03.09	사내규정 제정의 건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를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4	2017.05.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조정 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 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고
1	2017.02.28	1명 (1명)	발기인 총회
2	2017.03.03	1명 (1명)	이사회
3	2017.03.09	1명 (1명)	이사회
4	2017.05.26	1명 (1명)	이사회

(주25)

[정정전]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7.02.28	1)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017.03.03	1)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3)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4) 전환사채 발행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17.03.09	1) 사내규정 제정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

[정정후]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7.02.28	1)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017.03.03	1)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3)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4) 전환사채 발행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17.03.09	1) 사내규정 제정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
2017.05.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조정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주26)

[정정전]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총족여부	세부내역
	총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총족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 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총족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34억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총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총족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총족	정관 제3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총족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총족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11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10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7.63%)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정정후]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총족여부	세부내역
	총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총족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총족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34억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총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총족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총족	정관 제3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지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총족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총족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주27)

[정정전]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한화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8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은 11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10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7.63%)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정후]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한화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8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2017년 05월 19일

(발행회사명)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증권의종목과발행증권수)
기명식 보통주 5,000,000 주
(모집또는매출총액)
10,000,000,000원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7년 5월 19일
2. 모집가액 : 2,000원
3. 청약기간 : 2017년 05월 29일 ~ 2017년 05월 30일
4. 납입기일 : 2017년 06월 01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국거래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6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한화투자증권 (주)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에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주관회사명)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대표이사 등의 확인 】

대표이사 등의 확인

우리는 당사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 담당이사로서 이 공시서류의 기재내용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한 결과,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이 공시서류에 표시된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의 중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 년 5 월 19 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대표이사 : 홍 진 우



신고업무 담당이사 : 이 세 호



【 본 문 】

요약정보

1. 핵심투자위험

구 분	내 용
사업위험	<p>가.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목적 달성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p> <p>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주권의 최초모집 이전에 협상중이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어떤 회사와 합병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모집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p> <p>다. 당사가 목표한 합병대상기업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찾는데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있을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합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대상법인의 지정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합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p> <p>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2009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영진의 과거 경력사항 및 스폰서와 발기인들의 과거 평판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p> <p>마. 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까지 당사의 투자자들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p>

회사위험

가.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은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선임될 당시 및 신고서제출일 현재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 당사 임원은 모두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들이 다른 조직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 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당사의 공모전 투자자는 에스에스아이베스트먼트, 수성자산운용, 한화투자증권이며 동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합병기한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 당사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기업규모, 주식의 분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바.당사는 현행 상장규정상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을 준용받게 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당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당사 정관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사. 당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최초의 모집 이후에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p>아. 당사의 주식은 금번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으로 상장 후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가격은 상장 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p> <p>자. 당사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일반적인 수익 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나, 합병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운영비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p> <p>차. 당사 발기주주들의 지분율은 공모 및 합병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주주 구성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이 변경될 수 있는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

기타 투자위험

가.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
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5,000,000주, 주당 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지분희석률은
13.24% 수준입니다.

나. 당사는 공모자금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치자
금 반환 시 상환액은 운용자금의 운용방법(운용자산), 신탁자산 및 운용자
산의 금리 변동, 기타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본 공모희망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투자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5,440,000주 중 91.91%에 해당하는
5,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당사 발기주주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신주상장
일로부터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잔액 1,360백만원이
존재하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 총 전환가능 주식수는
1,360,000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동사의 주가
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마.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당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
자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
권 또한 행사가 제한됩니다.

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
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인수 업
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
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
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단위 : 원, 주)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 가액	모집(매출) 총액	모집(매출) 방법
기명식보통주	5,000,000	100	2000	10,0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화투자증권	기명식보통주	5,000,000	10,000,000,000	35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년 05월 29일 ~ 2017년 05월 30일	2017년 06월 01일	2017년 05월 26일	2017년 06월 01일	-		
자금의 사용목적						
구 분			금 액			
공모예치자금			10,000,000,000			
발행제비용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대상증권		행사가격		행사기간		
-		-		-		
매출인에 관한 사항						
보유자	회사와의 관계	매출전 보유증권수	매출증권수	매출후 보유증권수		
-	-	-	-	-		
-	-	-	-	-		
일반청약자 환매청구권						
부여사유	행사가능 투자자	부여수량	행사기간	행사가격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기 타】	<p>1. 모집가액 및 모집총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 기준입니다.</p> <p>2. 상기 인수대가는 금 삼억오천만원(W350,000,000)으로, 인수대가의 50%는 금번 일반공모의 주금납입 이후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에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p> <p>3. 일반공모 청약시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위탁계좌가 필요합니다. 위탁계좌는 일반공모 청약 초일의 전일인 2017년 05월 26일 까지 개설한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청약 당일에 개설된 계좌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밖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청약자격 및 한도에 관한 사항은 2017년 05월 26일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될 예정인 청약공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p>					

※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내역

(단위: 주, 원)

발행일자	주권의 종류	발행주권수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총발행금액
2017.02.28	보통주	440,000	100	1,000	440,000,000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I.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단위 : 주, 원)

증권의 종류	증권수량	액면가액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모집(매출)방법	
기명식보통주	4,000,000	100	2,000	8,000,000,000	일반공모	
인수인	증권의 종류	인수수량	인수금액	인수대가	인수방법	
대표	한화투자증권(주)	기명식보통주	4,000,000	8,000,000,000	350,000,000	총액인수
청약기일	납입기일	청약공고일	배정공고일	배정기준일		
2017.05.29 ~ 2017.05.30	2017.06.01	2017.05.26	2017.06.01	-		

주1) 모집(매출)가액(이하 "공모 **확정** 가액")의 산정근거는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매출)가액, 모집(매출)총액, 인수금액 및 인수대가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 **확정** 가액인 2,000원 기준입니다.

주3) 모집(매출)가액의 확정(이하 "확정공모가액")은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합의하여 1주당 2,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주4)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청약일은 2017년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입니다. 기관투자자 청약과 일반청약자 청약이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의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5) 본주식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목적으로 모집하는 것으로 2017년 03월 10일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3월 20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사후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사후이행사항 및 일부 상장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어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후이행사항]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 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주6) 상기 인수대가는 금 삼억오천만원(₩350,000,000)이며 상기 금액의 50%는 금번 일반공모의 주금납입일 이후 최초 영업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합병등기 완료시점(합병등기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합병이 실패할 시에는 합병등기 완료 시점에 지급되기로 한 나머지 50%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7) 본 공모 결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총 발행주식은 **5,800,000주**(전환사채 전액 전환 가정)가 되며 공모전 주주등(1,800,000주, 전환사채 전환가능주식수 포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희석요인을 반영한 주당 가중평균발행가격은 약 **1,685원**으로 공모희망가격인 2,000원과 비교할 때 **315원** 낮아집니다. 따라서 주당 장부가치 희석비율은 약 **15.75%**입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액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4,000,000	68.97%	1,800,000	31.03%	2,000	1,685	15.75%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확정**가액 × 공모주식수)
- * 희석비율 = (공모**확정**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확정**가액

2. 공모방법

2. 공모방법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신주모집 일반공모 방식에 의합니다.

[모집방법 : 일반공모]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공모	4,000,000주	100%

[일반공모 대상 배정내역]

공모대상	주식수	비율
일반청약자	1,365,000주	34.12%
기관투자자	2,635,000주	65.88%
합계	4,000,000주	100%

[공모 세부내역]

공모대상	주식수(비율)	주당 공모가액	모집총액	비고
일반청약자	1,365,000주(34.12%)	2,000원	2,730,000,000원	-

기관투자자	2,635,000주(65.88%)		5,270,000,000원	-
합계	4,000,000주(100%)		8,000,000,000원	-

주1) 금번 모집에서 일반청약자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를 통하여 청약이 실시됩니다.

※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자를 말합니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4의2호 및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한 자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라.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마. 가목부터 라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또는 특정금전신탁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①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②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다만,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2) 배정주식수(비율)의 변경

- ①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주식수(비율)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청약자 유형군별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 청약이 있는 다른 청약자 유형군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 ③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최종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합니다.
- ⑤ ④에도 불구하고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기관투

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주3) 주당공모가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기재한 것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결정** 하였습니다.

주4) 모집총액은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며, 청약일 전에 실시하는 수요예측 결과와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가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5)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2항 제1호에 따라 정정신고서 상의 공모 주식수는 금번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공모할 증권수의 100분의 80 이상과 100분의 120 이하에 해당하는 증권수로 변경가능하며,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협의하여 공모주식수를 5,000,000주에서 4,000,000주로 변경하였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 절차

당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를 위한 공모가격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주식의공모 가격 결정 등)」에서 정하는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개략적인 공모 가격 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요예측을 통한 공모가격 결정절차]

① 수요예측 안내	② IR 실시	③ 수요예측 접수	④ 공모가격 결정	⑤ 물량 배정	⑥ 배정물량 통보
수요예측 안내 공고	기관투자자 IR 실시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접수	수요예측 결과 및 증시 상황 등 감안,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최종 합의하여 공모가격 결정	확정공모가격이 상의 가격을 제시한 기관투자자 대상으로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물량 배정	기관투자자 배정물량을 대표주관회사의 홈페이지 개시 또는 유·무선을 통하여 개별 통보

나. 공모가격 산정 개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모**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 확정 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수요예측결과 반영여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별 자산규모, 장기보유 성향 등을 고려하여 참여수량을 집계하고, 가중평균 가격을 산정한 후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공모가격 결정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 주1) 상기 공모**확정**가액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절대적 평가가치가 아니며, 향후 국내외 시장상황, 산업위험 및 재무위험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발행회사의 주식가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2)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은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확정**가액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할 예정이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이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 주3) 공모**확정**가격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의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중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수요예측에 관한 사항

(1) 수요예측 대상 주식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수	비율	비고
기관투자자	2,365,000주	65.88%	-

- 주1) 상기비율은 공모주식수 4,000,000주에 대한 비율입니다.
- 주2) 일반청약자 배정분 34.12%는 수요예측 참여대상주식이 아닙니다.

(2) 수요예측 공고 및 수요예측 일정

구분	내용	비고
수요예측공고	2017년 05월 23일 (화)	주1)
수요예측일	2017년 05월 24일 (수) ~ 05월 25일 (목)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공고	2017년 05월 26일 (금)	

-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7년 05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 주2) 수요예측 마감시간은 국내외 모두 한국시간기준 2017년 05월 25일 오후 5시까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3)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수요예측 참여자격

(가) 기관투자자

"기관투자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제8호의 경우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금융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제13호부터 제17호까지, 제3항제3호, 제3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전문투자자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되거나 법 제249조의6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된 집합투자기구
- 다.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공단
- 라.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정사업본부
-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의 금융투자업자 (이하 “투자일임회사”라 한다)

※ 투자일임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따른 기관투자자일 것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금지된 자가 아닐 것
- ㉣ 투자일임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고, 수요예측 참여일전 3개월간의 일평균 투자일임재산의 평가액이 5억원이상일 것

- 바. 가목부터 마목에 준하는 법인으로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자
- 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제19호에 따른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

※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5 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해당 투자신탁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채권의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평균보유비율"은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 국내채권 각각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등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일일보유비율"이라 한다)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로 한다.
- ㉡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것
- ㉢ 단, 해당 투자신탁 등의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배정 시점에 비우량채권과 코넥스 상장주식을 합한 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고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의 보유비율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란 설정일·설립일부터 매 3개월마다 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균보유비율(코넥스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평가액에서 차지하는 매일의 비율을 3개월 동안 합산하여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2 이상인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을 말한다. 다만, 설정일·설립일부터 배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고, 배정시점에 코넥스 상장주식의 보유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2 이상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야. 금융투자업규정 제3-4조 제1항의 부동산 신탁업자(단, 고유재산으로만 기업공개를 위한 수요예측에 참여 가능)

※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참여한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 상기 바목에 해당하는 투자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해외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주관회사는 본 수요예측에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나 투자일임회사, 부동산신탁회사로 참여하는 경우 마목, 사목, 아목에 따른 투자자임을 파악하는 확인서를 징구하며, 동 서류와 관련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투자자가 해당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참여제외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①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함)
- ②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을 말하며, 동 규정 제2조제9호의 가목 및 라목의 임원은 제외함)
- ③ 기타 본 건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대표주관회사 및 인수회사 포함)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 ④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금번 공모 이전에 실시한 공모에서 수요예측일 현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분류되어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투자자

※ 금번 수요예측에 참여한 후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의거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여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지 12개월간 수요예측의 참여 및 공모주식 배정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지정 및 제재사항 등]

※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 :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배정받은 후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청약 후 주금 또는 무보증사채의 납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기업공개시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의무보유를 확약하고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이 경우 의무보유기간 확약의 준수여부는해당기간 중 일별 잔고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 3. 수요예측에 참여하면서 관련 정보를 허위로 작성·제출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인수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불성실수요예측참여자의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증권인수업무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제3항 및 4항에 의거 한화증권(주)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를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며, 해당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제재사항 등을 기재한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인터넷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1.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법인명 및 대표자명

2. 당해 수요예측을 실시한 대표주관회사명
3. 제재사유 발생일자
4. 제재사유(구체적인 내용을 포함)
5. 제재내용 및 기간

※ 불성실 제재사항 :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일정기간 수요예측 참여 제재

구분	적용대상		제재내용	
수요예측 참여금지	미청약 미납입	위반금액	20억원 초과	12개월 이내 금지
			10억원 초과 ~ 20억원 이하	10개월 이내 금지
			2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개월 이내 금지
			2억원 이하	6개월 이내 금지
	의무보유 확약위반		6개월 이내 금지	
	허위 정보제출		6개월 이내 금지	

주1) 가중 : 해당 사유발생일 직전 2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를 한 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 범위 내 가중할 수 있으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행위가 1회인 경우 100분의 50, 2회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가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주2) 감경 및 면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고 위반결과가 경미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 발생일 직전 1년 이내에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행위가 없었고, 미청약·미납입 또는 의무보유확약 위반 규모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그 위반결과가 극히 경미한 경우에는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음

주3)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 ⑤항에 의거하여 제재금이 부과된 경우는 상기사항이 미적용됨

(4) 수요예측 참여수량 최고 및 최저한도

구분	신청수량 한도	최저한도
기관투자자	각 기관별로 법령 등에 의한 투자한도 잔액(참여수량 × 신청 가격) 단, 수요예측 대상 주식 2,365,000주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000주

주1)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는 물량 배정시 "참여가격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 규모, 기관투자자의 성격, 공모 참여실적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량배정이 이루어지는 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최대 수요예측 참여수량 전체에 해당하는 물량이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예측 참여시 이러한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여 반드시 각 수요예측 참여자가 소화할 수 있는 실수요량 범위 내에서 수요예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5) 수요예측 참여수량 및 가격 단위

구분	내용
수량단위	1,000주
가격단위	100원

※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금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수요예측 참여방법 등

1) 접수일시

접수기간	접수시간	접수방법	문의처
2017년 05월 24일(수) ~ 05월 25일(목)	09:00 ~ 17:00	온라인 접수 (http://www.hanwhawm.com)	☎ 02-3772-7318

2)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해외 기관투자자의 경우도 동일)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서류		- 대표주관회사가 교부하는 수요예측참가신청서 (대표이사 명의의 사용인감 혹은 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서류	집합투자회사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펀드설정기간,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참여총괄집계표' (소정양식) - 수탁회사의 펀드설정확인서 및 수탁회사에 대한 투자신탁금 입금증 사본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으로 참여하는 기관투자자	-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 및 날인하여 한화투자증권(주) Coverage사업부 IB Advisory 센터에 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IBA@hanwha.com)
	일반기관투자자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 상호저축은행은 자기자본이 표시된 서류를 추가 제출

(8) 수요예측 참여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으며, 서면으로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다만, 한화투자증권(주)의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인터넷 접수가 불가능할 경우 및 수요예측 참여자의 인터넷 수요예측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유선, fax, e-mail 등의 방법에 의

해 접수를 받습니다.

[인터넷 접수방법]

1) 홈페이지 접속:

① www.hanwhawm.com ⇒ 고객지원 ⇒ 공지 ⇒ 기관수요예측 ⇒ 참가신청

2) Log-in : 사업자등록번호(해외기관투자자의 경우 0+투자등록번호), 한화투자증권(주)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입력

3) 참여기관투자자 기본정보 입력(또는 확인) 후 수요예측 참여

4) 자본시장법 제8조 제6항 및 제7항의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그 외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분을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각각 개별 계좌로 신청해야 합니다.

6) 집합투자회사, 뮤추얼펀드 및 신탁형펀드의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펀드설정금액, 계좌번호, 신청가격, 신청수량' 등을 기재한 '수요예측총괄집계표'Excel 파일을 e-mail로 제출(IBA@hanwha.com)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투자자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참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정하는 '펀드명, 계좌번호, 자산총액, 자산구성내역, 신청가격, 신청수량,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8호에 따른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해당됨을 확인하는 내용'등을 기재한 '확약서'를 e-mail로 제출(IBA@hanwha.com)하여야 합니다.

7) 집합투자회사가 통합신청하는 각 펀드의 경우 수요예측일 현재 약관승인 및 설정이 완료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동일한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각 펀드별 수요를 취합하여 1건으로 통합신청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펀드별 참여내역을 기관투자자 명의 1건으로 통합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해야 합니다. 한편, 해당 펀드의 종목별 편입한도, 만기일 등은 사전에 자체적으로 확인한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후 물량배정시에 당해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전체 물량 (뮤추얼 펀드, 신탁형 펀드 등에 배정되는 물량을 합산한 물량)을 배정하며, 또한 기관투자자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해서는 1건으로 통합 배정합니다. 펀드별 물량배정은 각각의 집합투자업자 및 그 외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의해 자율적으로 배정합니다. 단, 해당 펀드에 배정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발행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9) 수요예측 관련 기타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 참여내역은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전까지 정정 또는 취소가 가능하며, 최종 접수된 참여내역만을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요예측 마감시간 이후에는 수요예측 참여/정정/취소가 불

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국내외 기관투자자는 수요예측 참여 이전까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 본인 명의의 위탁 계좌가 개설되어 있어야 합니다. 집합투자회사의 경우 고유재산, 집합투자재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그 외기관투자자가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합니다.

(다) 수요예측 인터넷 참여를 위한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기관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사업자(투자) 등록번호, 위탁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해 기관투자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밀번호 5회 입력 오류시에는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여 한화투자증권(주) 영업점을 방문하여 비밀번호 변경을 하여야 하오니, 수요예측 참여 전에 반드시 비밀번호를 확인하신 후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금번 수요예측에 있어서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수량 혹은 총 참여금액만 제시하는 참여 방법을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투자자는 확정공모가액으로 배정받겠다고 의사표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 수요예측 참여시 입력(또는 확인)된 참여기관의 기본 정보에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참여 자체를 무효로 하며,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가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펀드에 대해 불성실 수요예측참여자로 관리합니다.

또한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각 펀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조의15 제1항에 따른 투자신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표주관회사는 해당 기관투자자가 제출한 확약서 등의 소정의 양식에 의거하여 판단합니다. 동 사항에 대해 허위 및 과실로 제출하였을 경우 불성실수요예측 참여자에 해당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는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가입자가 인수회사 및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이 공모주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0)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표주관회사 및 발행회사가 합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며, 대표주관회사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화투자증권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합니다.

(11) 수량배정방법

확정공모가액 이상의 가격을 제시한 수요예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참여가격,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확약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배정물량을 결정합니다.

특히, 금번 수요예측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기관투자자 중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 이상을 배정하되, 코넥스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5% 이상을 우대배정하고,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포함한 전체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잔여주식을 배정합니다.

대표주관회사는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범위(자산총액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내에서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참여시점 및 참여자의 질적인 측면(운용규모, 투자성향, 공모 참여실적, 의무보유 확약여부, 자기자본 규모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대표주관회사가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합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또는 청약 경쟁률,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참여도, 기관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배정비율을 달리할 수 있으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 물량 중 미배정 물량은 기타 기관투자자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2) 배정결과 통보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최종 결정된 확정공모가액을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하며, 기관별 배정물량은 수요예측 참여기관이 개별적으로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 「www.hanwhawm.com ⇒ 고객지원 ⇒ 공지 ⇒ 기관수요예측」에 접속한 후 배정물량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개별 통보에 갈음합니다.

(13) 기타 수요예측 실시에 관한 유의사항

(가)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 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에 대한 청약이 모두 완료되는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나) 상기와 같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추가 청약 후 잔여물량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 배정 물량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다) 상기 배정의 결과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여 배정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판단하여 배정에 대한 기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4) 수요예측 결과

① 기관투자자 수요예측 참여내역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단순경쟁률
31	2,884,000	1.09 : 1

②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구분)	참여건수(건)	신청수량(주)	비율(%)
2,000원	31	2,884,000	100.00%
2,000원 미만	-	-	-
합계	31	2,884,000	100.00%

라. 주권의 최초모집 전에 발행된 주식등에 관한 사항

(1) 주식의 발행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는 금번 공모 전 1회(발기설립시) 주식을 발행하였습니다.

발행일자	주식의 종류	발행주식수	주식액면가액	주당발행가액	총발행금액
2017.02.28	보통주	440,000	100	1,000	440,000,000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구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지분율	비고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보통주	400,000	90.91%	발기인, 최대주주
수성자산운용(주)	보통주	20,000	4.55%	발기인
한화투자증권(주)	보통주	20,000	4.55%	발기인
합 계	보통주	440,000	100.00%	-

(2) 전환사채 발행 현황

구분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자	2017년 03월 07일
만기일	2022년 03월 07일
권면총액	1,3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신주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2018.03.07~2022.03.06)
전환비율 및 가액	사채권면 금액의 100% / 1,000원(액면가 100원 기준)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수성자산운용(주) 480,000,000원(35.29%), 한화투자증권(주) 880,000,000원(64.71%)
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
비고	<p>[전환가액의 조정]</p> <p>1.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p>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div \text{시가}) \} \div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p>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p> <p>3.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p>

주)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수성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음.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라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함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모집 또는 매출일정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내 용	
모집 또는 매출주식의 수		기명식 보통주 4,000,000주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예정가액	2,000원	
	확정가액	2,000원 / 주1)	
모집총액 또는 매출총액	예정가액	10,000,000,000원	
	확정가액	8,000,000,000원	
청약단위		주2)	
청약기일	기관투자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일반청약자	개시일	2017년 05월 29일
		종료일	2017년 05월 30일
청약증거금	일반모집 또는 매출		100.0%
배정 공고		2017년 06월 01일	
납입기일		2017년 06월 01일	

주1) 주당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 **확정**가액으로서, 청약일 전 대표주관회사가 수요예측을 실시하며 동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한 후 주당확정공모가액을 최종 결정 **하였습니다**.

주2) 청약단위

-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합니다.
- ② 일반청약자는 한화투자증권(주)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 「다. 청약에 관한 사항」의 「(4)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은 「I. 모집 또는매출에 관한 일반 사항」의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다. 청약에 관한 사항」 및 「라. 청약 결과 배정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청약증거금

- ① 기관투자자의 청약 증거금은 없습니다.
- ② 일반청약자의 청약 증거금은 청약금액의 100%로 합니다.
- ③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17년 06월 01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납입금을 초과하는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 반환하며,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 ④ 기관투자자는 금번 공모에 있어 청약증거금이 면제되는 바, 청약(우선 청약 및 추가 청약)하여 배정받은 물량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일인 2017년 06월 01일 08:00 ~ 12:00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납입금액이 기관투자자가 청약하여 배정받는 주식의 납입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을 총액인수계약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⑤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주금납입금을 납입기일에 우리은행 여의도중앙금융센터에 납입합니다.

주4) 청약취급처

① 수요예측에 참여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② 일반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나. 공모일자 및 방법

구분	일자	신문
수요예측 안내공고	2017년 05월 23일 화요일	인터넷 공고(주1)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 의 공고	2017년 05월 26일 금요일	인터넷 공고(주2)
청 약 공 고	2017년 05월 26일 금요일	인터넷공고(주3)
배 정 공 고	2017년 06월 01일 목요일	인터넷 공고(주4)

주1) 수요예측 안내공고는 2017년 05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2)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정공고는 2017년 05월 26일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하며, 청약공고시 함께 공고합니다.

주3) 청약공고는 2017년 05월 26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를 통해 공고합니다.

주4)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공고는 2017년 06월 01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주5) 상기 일정은 추후 공모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약방법

(1) 청약의 개요

모든 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청약증거금(단, 기관투자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면제됨)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반청약자의 청약

일반청약자는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 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 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청약사무 취급처내에서의 이중청약은 불가합니다.

※ 청약사무 취급처: 한화투자증권(주) 본 · 지점

(3) 일반청약자의 청약자격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청약자격은 별도 규정되어 있으나,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청약시에는 최초 청약일 전일까지 계좌개설이 되어 있는 고객 누구나 동일한도의

청약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해당 청약자격은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본청약 이후 청약시에는 기존 한화투자증권(주)의 청약자격을 적용받습니다. 청약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자격]

구분	내용
청약자격	청약개시 직전 영업일까지 개설된 청약가능계좌 보유 고객(청약 당일 청약가능계좌 개설 고객 청약 불가)
청약한도 및 우대기준	금번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공모청약시 우수고객 우대 기준에 의한우대 청약한도 등이 적용되지 않음
청약수수료	없음.
청약증거금	100% (모든 고객에게 동일 적용)

(4)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 및 청약단위

일반청약자는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단위는 아래와 같으며 기타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하여 공시한 방법에 의합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한도]

구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최고 청약한도	청약증거금율
한화투자증권(주)	1,365,000주	130,000주	100%

주) 한화투자증권(주)의 일반청약자 최고청약한도는 130,000주이며, 금번 공모시에는 한화투자증권 일반청약자 청약 우대 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약 전일까지 계좌개설 고객의 경우 누구나 최고 청약한도까지 청약이 가능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청약관련 일반청약자 청약단위]

청약주식수	청약단위
100주 이하	10주
100주 초과 ~ 1,000주 이하	100주
1,000주 초과 ~ 10,000주 이하	500주
10,000주 초과 ~ 20,000주 이하	1,000주
20,000주 초과 ~ 50,000주 이하	5,000주
50,000주 초과~130,000주 이하	10,000주

(5) 기관투자자의 청약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해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수

요예측을 접수한 한화투자증권(주)에 청약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수요예측에 참가하여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청약은 청약일인 2017년 05월 29일~30일 08:00~17: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한화투자증권(주)가 정하는 소정의 주식청약서(청약증거금을 0%)를 작성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여야 하며, 동 청약 주식에 해당하는 주금을 납입일인 2017년 06월 01일 08:00~12:00(한국시간 기준) 사이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수요예측에 참가한 기관투자자 중 수요예측결과 배정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청약하고자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체 기관투자자 배정물량(2,635,000주) 범위 내에서 추가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요예측에 참가하지 않았거나, 수요예측에 참여하였으나 배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공모가액으로 배정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관투자자등은 대표주관회사에 미리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청약일에 추가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요예측에서 배정된 수량이 모두 청약된 경우에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약일 종료 후 미청약된 물량에 대해서 배정전까지 기관투자자는 추가로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추가청약된 물량의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6) 청약이 제한되는 자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대표주관회사에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청약을 한 경우에는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7) 기타

본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정요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만약 정정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동 신고서에 기재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가 이 지분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므로 본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는 전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청약취급처

- (1) 기관투자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점 및 지점
- (2) 일반청약자 : 한화투자증권(주) 본점 및 지점

마. 청약결과 배정방법

- (1) 공모주식의 배정비율

구분	비율	배정 주식
기관투자자	65.88%	2,635,000주

일반청약자	34.12%	1,365,000주
합 계	100.00%	4,000,000주

- 주1)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 비율은 기관투자자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청약일 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기 청약자 유형군에 따른 배정분 중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초과청약이 있는 다른 항의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 주2) 청약자 유형군 합산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 주3) 단,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기타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배정방법

- (가) 기관투자자의 청약에 대한 배정은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배정받은 수량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되, 추가 청약에 대한 배정은 대표주관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배정합니다.
- (나) 일반청약자가 청약한 주식은 청약주식수에 비례하여 안분배정합니다.
- (다)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원칙적으로 5사 6입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 되도록 배정합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한화투자증권(주)가 총액인수계약서에 따라 자기계산으로 인수하거나 추첨을 통하여 재배정합니다.

[청약취급처별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청약취급처		배정주식수	배정기준	공고방법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	1,365,000주	주)	본·지점 및 홈페이지

주1) 안분배정 후 잔여주식은 추첨

(라) 단, 인수회사 및 인수회사의 이해관계인,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발행회사 또는 인수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등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배정결과의 통지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결과 각 청약자에 대한 배정내용 및 초과청약금의 환불 또는 미달청약금에 대한 추가납입은 2017년 06월 01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기관투자자 등의 경우에는 수요예측을 통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내역과 청약내역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개별통지합니다.

바.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1) 투자설명서의 교부 및 청약방법

자본시장법에 의거 누구든지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아래에서 언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에게 자본시장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

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다만, (i) 자본시장법 제9조 제5항의 전문투자자, (ii)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규정된,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 (iii)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는 투자설명서의 교부 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의무가 있는 대표주관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24조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하여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를 청약전 교부할 예정입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후 투자자는 투자설명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청약기간에 각각의 청약취급처에서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한화투자증권(주) 투자설명서 교부 방법]

구분	청약방법	비고
영업점 내방	본 공모의 청약 취급처인 한화투자증권(주)의 본·지점에서 청약하실 경우에는 인쇄물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서 작성시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서의 교부 희망 또는 교부 거부를 선택하신 후 청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HTS/홈페이지 청약	한화투자증권(주)의 HTS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 교부에 동의하여야 하고, 전자매체를 지정하여야 하며, 수신 사실이 확인되어야지만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사의 HTS와 당사 홈페이지(www.hanwhawm.com)에서 인터넷뱅킹 ⇒ 청약 ⇒ 청약신청/취소 ⇒ 청약신청 ⇒ 청약구분에서 "코스닥"에서 투자설명서를 확인하셔야만 청약이 진행됩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인쇄물(책자)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
고객지원센터 유선청약 /ARS 청약	청약신청 전에 투자설명서 교부 확인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청약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방법으로는 아래 교부방법 중 택 일하여 등록 처리함. 1) 다운로드, 2) e-mail수신, 3) 교부거부(유선으로도 신청가능) 고객지원센터 청약이 가능하며, ARS 청약의 경우 ARS 약정 등록된 고객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

1)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고자 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에 의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2)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2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2-5조 제2항에 의거 투자설명서 교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주관회사에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서면, 전화, 전신, 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의 주체

자본시장법에 의거 금번 청약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 의무는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 있습니다. 다만, 투자설명서 교부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총액인수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설명서 교부는 청약취급처인 대표주관회사 한화투자증권(주) 본·지점에서 수행합니다.

사. 주금납입장소

대표주관회사는 청약자의 납입주금을 납입기일인 2017년 06월 01일에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에 납입하여야합니다.

아. 주권교부에 관한 사항

(1) 주권교부예정일 : 청약결과 주식배정 공고 시 대표주관회사가 공고합니다.

(2) 주권교부장소 : 각 해당 청약사무취급처에서 교부합니다.

(3) 상기 (2)에 불구하고 청약자 또는 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제30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주식의 발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청약자 또는 인수인에게 배정된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 발행되며, 이 경우 발행주권은 청약사무취급처인 한화투자증권(주)의 청약자 또는 인수인의 계좌에 자동입고 됩니다.

자. 기타의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공모는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일반공모 증자방식이므로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의 효력에 관한 사항

본 주권교부일 이전의 주식양도는 발행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 제4항에 의거 주권발행전에 코스닥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상 계좌간 대체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335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행회사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대표주관회사의 정보이용 제한 및 비밀유지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총액인수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발행회사의 경영개선 이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4) 주권의 매매개시일

주권의 신규상장 및 매매개시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한국거래소 시장 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입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인수방법에 관한 사항

[인수방법 : 총액인수]

인수인			인수주식의 종류 및 수	인수금액	인수조건
명칭	고유번호	주소			
한화투자증권(주)	0014861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기명식 보통주 5,000,000주	10,000,000,000원	총액인수

주1)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전체공모물량의 100%를 총액인수하며, 인수계약서상 인수 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주2) 인수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제시한 공모 **확정**가액 2,000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입니다**.

주3) 기관투자자 및 일반청약자 배정 후 청약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총액인수계약서에 의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자기계산으로 최종 실권주를 인수합니다.

나. 인수대가에 관한 사항

구분	금액	비고
인수수료	350,000,000원	주1), 주2)

주1)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에게 인수대가로 금 삼억오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합니다. 다만, 인수수료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금번 일반공모의 주금납입일에 지급되며, 나머지 50%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 성공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등기완료시점에 지급됩니다.

주2)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인수인에게 지급되는 기타 대가 및 보상은 없습니다.

다. 기타의 사항

(1) 회사와 인수인 간 특약사항

당사는 금번 공모와 관련하여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와 체결한 총액인수계약일로부터 코스닥시장 상장 후 1년까지 대표주관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주식 또는 전환사채 등 주식과 연계된 증권을 발행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매수 또는 매도를 하지 않습니다.

(2) 회사와 주관회사 간 중요한 이해관계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제1항 단서 상의 예외에 해당하여 주관회사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공동주관회사)

① 금융투자회사는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합하여 100분의 5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른 금융투자회사(해당 발행회사와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해당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기업공개를 위한 주관회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

2. 외국 기업(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외국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6조제6항제2호에 따라 취득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코스닥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 및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코넥스시장 상장예정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비율 산정에 있어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불구하고 금융투자회사 또는 금융투자회사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이하 이항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발행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거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조합등에 출자하고 해당 조합등이 금융투자회사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에 출자한 비율만큼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

4. 법 제26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사모투자전문회사가 금융투자회사 또는 발행회사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3) 초과배정옵션

금번 공모에는 초과배정옵션계약이 없습니다.

(4) 기타 공모 관련 서비스 내역

당사는 금번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기타 인수인이 아닌 자로부터 인수회사 탐색 중개, 모집 또는 매출의 주선, 공모가격 또는 공모조건에 대한 컨설팅, 증권신고서 작성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I.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금번 당사 공모 주식은 상법에서 정하는 액면가액 100원의 기명식 보통주로서, 동 증권의 주요 권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의 종류

정관 제9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 액면금액

정관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으로 한다.

3. 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 제6조(발행예정주식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로 한다.

정관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 및 2호 중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4. 의결권에 관한 사항

정관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정관 제26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0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

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관 제27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정관 제28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정관 제12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가. 당사는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게 되며,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합병승인이 부결될 경우 합병 실패로 인해 당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또한 상법 527조의2 및 527조3에 따른 소규모 합병 및 간이합병을 할 수 없고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합병대상법인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며, 향후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합병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상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합병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의 정관 제59조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밟게 되며, 공모예치자금 등은 정관 제60조에 따라 투자자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한편,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공모전주주들의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므로 최종 합병승인의 의사결정은 이번에 참여한 공모주주로 한정됩니다. 만약,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공모주주들이 합병을 반대하는 경우 합병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과도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규모가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이거나, 전체 행사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합병이 부결될 수 있다는 조건부 합병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병 부결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합병이 실패할 위험이 존재하오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 중이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사가 어떤 회사와 합병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모집한 주금납입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을 선정하여 한국거래소에 합병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치 못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공모전 합병대상회사를 특정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

이 존재하는 것을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모집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당사 경영진 이력사항 및 스폰서의 평판 등에 의지하여 당사의 공모에 투자하여야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합병 시한이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공모 후 30개월 이내 합병 예비심사청구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15의2호 마목에 따라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편입될 수 있으며, 관리종목 편입 후 1개월 이내에 동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 제1항 24호 마목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최초 모집한 주권납입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면 해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해산 시에는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투자자들은 공모예치자금을 지분율에 비례하여 반환받게 됩니다.

최초 모집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당사가 향후 어떤 회사와 합병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사의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다. 당사가 목표한 합병대상기업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찾는 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있을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합병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병대상법인의 지정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합병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산업군)에 의거하여 향후 잠재적 성장성이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서비스, 모바일/게임,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IT 및 반도체, 소재,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내에서 우량회사를 발굴하여 합병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합병대상기업으로 목표하는 사업 분야와 유사한 합병대상기업을 목표로 하는 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있을 경우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되며, 이로 인해 제한된 시간 이내에 합병을 성공시킬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하여 원활한 합병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PEF, 벤처금융, 전략적 투자자 등과도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바, 당사가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동 경쟁자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동 경쟁자들과는 달리 합병이라는 단일 방법에 의해서만 M&A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상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당사는 경쟁자들에 비해 경쟁 열위에 처할 수 있으며 원하는 기업과의 합병에 실패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 제9호에 따라 회계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회사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하고 있으며,

2014년 6월 30일 개정된 외감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1호의 개정으로 인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피합병대상이 되는 법인의 경우 지정감사를 수감하도록 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동 시행령 부칙에 따라 시행령 시행 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됨에 따라 2015년 4월 1일 이후 합병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법인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합병대상법인이 합병을 목적으로 지정감사인을 신청할 경우, 지정된 감사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외부감사인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정감사인 선임 및 감사보고서 제출에 대한 추가시간과 비용 등이 발생하여 합병이 지연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업인수목적회사는 2009년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 경영진의 과거 경력사항 및 스폰서와 발기인들의 과거 평판이 당사의 성공적인 합병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당사의 주요 임직원은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설립, 비상장 우량회사의 발굴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을 통한 상장 등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대상법인의 발굴, 합병 절차 진행 등에 관한 Know-how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우량한 합병대상기업을 물색하고 성공적으로 합병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당사의 유일한 사업목적인 타 법인과와의 합병이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위험은 존재합니다.

청구일 현재 당사의 임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담당 업무	소유 주식 수	비고
17.02.28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홍진우 (69.08.01)	'16.11~ : 수성자산운용 상무이사 재직 '07~16: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04~07: 농협중앙회 공제보험기획부(현,농협생명) '95~04: SK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등 '95 : 중앙대 경영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경영총괄	-	수성자산운용 상무 이사
17.02.28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이세호 (76.09.21)	공인회계사 '16.07~: 한화투자증권 IB '13~16: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M&A팀 '10~13: HMC증권 IB '09~10: 신영증권 IB '07~08: 제일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03~07: 대신증권 IB '03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경영총괄	-	한화투자증권 차장
17.02.28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황재필 (71.04.03)	'15.08~: Corea Investment 상무이사 재직 '14~15: NH은행 PE단 PEF운용 '99~14: 현대증권 P팀 '99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 '96 :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졸업	경영자문	-	Corea investment 상무

17.02.28	감사 (비상근/등기)	전성배 (73.08.19)	'1510~ :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변호사 '13~ : 계약심의위원회의원, 청렴감사위원회 위원 '13~'17: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12~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간사 '09~ : 한국산학연합연구재단 자문변호사 '08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03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석사 졸업	감사	-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변호사
----------	----------------	-------------------	--	----	---	-----------------

당사의 임원 주요경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성명	수행연도	M&A 및 IPO 관련 업무 내용
홍진우	2016년	제이엔케이히터, 아이씨디 등 전환사채 투자 및 하나마이크론 블록딜
	2007년 ~ 2015년	유진투자증권 신탁상품 MMT 1조원 이상 운용 하이일드메자닌공모주 랩어카운트 운용 하이일드스팩 랩어카운트 운용
	2004년 ~ 2007년	농협중앙회 국고채, 회사채 등 자산운용 및 경제, 금융시장 등의 분석업무 수행
	1995년 ~ 2004년	SK투자신탁운용MMF 1.5조원, 시가형 1조원 등 채권관련 펀드 운용
이세호	2017년	한화엠지아이스팩 합병상장
	2015년	금호고속, 대우증권 인수금융
	2014년	원방테크, ADT캡스 인수금융
	2013년	금호종금 매수자문
	2011년	부스타, 화진, HMCIB제1호스팩 상장
	2008년	미주씨앤아이 합병비율 평가
	2007년	아이썬, 블랙미디어 기업인수 실사, 미광콘택츠렌즈 합병비율 평가
	2007년	현우산업 상장
황재필	2013년	KG케미칼, 매일유업, KG이니시스 BW투자
	2012년	팅크웨어, 동성화학 BW투자
	2011년	현진소재, 루멘스, 태웅 BW 투자
	2010년	동성화인텍 보통주 및 우리산업 RCPS 투자
	2009년	시노팩스 및 한진P&C BW 투자
	2008년	한국콜마 CB투자
	2007년	흥국쌍용화재 CB 투자

마. 환금성 제약에 관한 위험
 당사는 최초 모집한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최초 모집일부터 3년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합병 이전까지 당사의 투자자

들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활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장내매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해산시 투자금액 반환 등의 방법을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의 유일한 사업목적이 다른 법인과의 합병이기 때문에 합병이 발생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기다려야 하며, 주식시장에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장내매도를 통한 환금성에 상대적인 제약과 이에 따른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체적인 합병대상회사가 없으며 향후 언제 합병절차가 진행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역시 장기간 행사되지 못할위험이있습니다. 당사는 최초 모집한 주금을 납입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하거나, 최초 모집일부터 3년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등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 실패 이외에 다른 해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회수는 최초모집 이후 31개월(30개월 경과 후 관리종목 지정,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후 상장폐지)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해산으로 인한 투자자금 반환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2. 회사위험

가. 향후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 불충족시 기업인수목적회사 지위 상실위험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증권의 공모를 통해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집합투자의 적용배제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집합투자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충족여부		세부내역
	충족	미충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충족	-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 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 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 원 이 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충족	-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51억 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 당되지 않을 것	충족	-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	정관 제59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 지지 않을 것	충족	-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 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 유할 것	충족	-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다만, 향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당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신규상장 승인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되어 해산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은 금융투자업자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적용됩니다. 당사의 임원들은 선임될 당시 및 신고서제출일 현재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에 결격사유가 없으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어 회사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요건이 적용됩니다. 이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주식발행자금의 별도예치, 해산시 예치자금의 분배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이 많으므로 이를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의 경력이 건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은 선임될 당시뿐만 아니라 선임된 후에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을 상실하게 되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 임원들의 기업인수목적회사 임원자격제한 해당 여부는 「제2부 발행인의 관한 사항」의 「Ⅶ.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중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일 제출일 현재 당사의 임원은 이사 3인과 감사 1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인수목적회사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금융투자업자 임원 자격 제한 사항에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임원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즉시 임원을 변경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임원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제1항 15의2호에 따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임원이 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이사의 수가 3명 이상이고 감사의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당사 임원은 모두 타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들이 다른 조직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 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임원은 모두 타 회사 임직원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당사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의 업무특성상 모든 임원들이 상근하면서 당사 업무에 전념할 필요는 없으나 타 회사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당사 업무에 소홀할 수 있으며 합병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타사 겸직 현황]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홍진우	수성자산운용(주)	투자기관	상무이사	투자/자문	2016.11~현재
이세호	한화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	차장	IPO	2016.07~현재
황재필	Corea Investment(주)	투자기관	상무이사	투자/자문	2015.08~현재
전성배	법무사무소 그들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변호사	2015.10~현재

한편 당사는 이해상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구성원 중 1명을 사외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사는 합병이 제한되는 특별이해관계 법인의 범위를 정관상 명시하여 합병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의 임원들이 다른 조직의 임직원을 겸직함으로써 원 소속 조직에 대한 신의성실의무와 당사에 대한 신의성실의무 간의 이해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당사의 공모 전 투자자는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수성자산운용 (주), 한화투자증권(주)이며 동 투자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병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발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합병기한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공모전 투자자는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수성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입니다. 당사의 합병대상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전 투자자간 또는 공모전 투자자와 공모주주간 이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합병의사결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병이 성공하지 못하고 해산할 경우 최초 모집에 참여한 일반주주들과는 달리 당사의 받기주주들은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이해상충이 존재하기 때문에 받기주주들은 특정 합병대상회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병조건 등을 협의할 때 일반주주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우선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합병기한이 다가올수록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공모주주는 합병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대의사에 입각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등 적절한 견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당사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기업규모, 주식의 분산,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재심사 사유에 해당되어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는 2017년 03월 10일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2017년 03월 20일에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당사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완료일)까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며, 본 공모는 이를 충족할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집을 통해공모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가 본 공모를 통해 일부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거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9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상장예비심사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재심사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어 당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투자자는 주식의 환금성에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결과]

1. 상장예비심사결과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상장주선인을 통하여 제출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및 동 첨부서류를 코스닥시장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제8조(상장예비심사등)에 의거하여 심사한 결과, 사후 이행사항을 제외하고 신규상장 심사요건을 구비하였기에 다음의 조건으로 승인함

- 다 음 -

사후 이행사항
 - 청구법인은 상장규정 제11조에서 정하는 신규상장신청일(모집 완료일)까지상장규정 제7조의3 제1항 제1호(기업규모), 제2호(주식의 분산), 제8호(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2. 예비심사결과외의 효력 불인정

□ 청구법인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본 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 예비심사결과와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구법인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

- 1) 상장규정 제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 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
 -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또는 첨부서류의 내용 중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3) 상장규정 제4조의3제1항제1호의 서류(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지정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 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상장예비심사청구법인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거나 동규정 제55조제1호(1년이내의 기간의 유가증권의 발행제한) 또는 제56조제1항(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해당하는 조치를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정정신고서의 정정내용이 중요한 경우
 - 5) 상장예비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상장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상장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다만, 당해 법인이 코스닥시장의 상황급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규상장 신청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 거래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을 6월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6) 그 밖에 상장예비심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3. 기타 신규상장에 필요한 사항

□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4조제4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1) 증권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 2) 경영상 중대한 사실(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합병등, 소송의 제기, 영업활동의 중지, 주요자산의 변동 등)
- 3)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를 한 때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의 정정사항을 포함한다.
- 4) 당해 사업연도 반기종료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5)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된 경우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사는 2017년 03월 20일 상기와 같이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이 중 '사후이행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후 충족되지 않는 경우, 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결과와 효력이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규정	충족여부
제7조의3 제1항 제1호 (기업규모)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일 것 나. 기준시가총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충족 가능 (80억원 공모 예정)

제7조의3 제1항 제2호 (주식의 분산)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해당할 것. 이 경우 같은 호의 "500인 이상"은 각각 "200인 이상"으로 한다.	충족 가능
제7조의3 제1항 제8호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신규상장신청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발행금액이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주식등의 발행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충족 가능 (80억원 공모시 9.18%)

바. 당사는 현행 상장규정상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을 준용 받게 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요건을 적용 받습니다. 당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당사 정관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인 당사는 현행 상장규정상 일반법인에게 적용되는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및 제38조)을 준용받게 되며,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 요건(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 1항 15의2호 및 제38조 1항 24호)을 적용 받습니다.

당사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며,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별도 사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별도사유]

구분	관리종목 지정 사유	상장폐지 사유
임원의 자격미달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6월 이내 미해소
주식분산기준 미달	소액주주 40인 미만이거나 소액주주주식수/유동주식수의 10% 미만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미해소
자금 예치의무 위반 등	예치·신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예치·신탁 자금 인출 또는 담보 제공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미해소
재무활동 제한의 위반	채무증권발행·차입·채무보증·담보제공	관리종목 지정 후 10일 이내 미해소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	존립기한의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또는 합병 결의 신고 없는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1월 이내 미해소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업무 위반	금융투자업자 소유주식등의 발행금액이 발행총액 5% 미만	관리종목 지정 후 3월 이내 미해소
의결권행사 제한 등에 관한 약정위반	-	최초 공모 전 투자자의 의결권,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및 예치자금 반환 준수 약정 위반
사업목적 위반	-	다른 회사 주식 소유, 영업·자산양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 합병 외의 사업 활동 영위

상장부적격 법인과의 합병 등	-	상장부적격 법인과의 합병 결의
--------------------	---	------------------

당사는 상기와 같은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어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되며, 정관 제59조에 따라 해산하게 됩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당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최초의 모집 이후에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61조 제1항에 의해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관 제61조 제2항에 의해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바, 당사는 2017년 3월 7일 1,360백만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발기인인 수성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이 각각 480백만 원, 880백만 원을 인수하였습니다.

아. 당사의 주식은 금번 상장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거래되는 것으로 상장 후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모가격은 상장 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하여 투자금액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의 주식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으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이외의 기타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이후 당사의 주식에 대한 매매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요예측을 거쳐 당사와 대표주관회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주식의 공모가격은 상장 이후 시장에서 거래될 시장가격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며 당사의 재무실적, 당사 및 경쟁회사의 전망, 당사의 임원, 당사의 미래 수익 및 원가구조에 대한 전망, 당사의 발전 현황, 당사와 유사한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공개기업의 가치평가, 주식시장의 변동과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공모가격이나 그 이상의 가격으로 주식을 재매각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투자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유의해주시

기 바랍니다.

자. 당사는 다른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일반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으나, 합병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보수 및 기타 운영비용,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 등으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는 타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존속기간 동안 일반적인 수익창출활동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합병 전까지 경영진에 대한 보수 지급 및 기타 운영비용의 발생, 합병 추진 시 회계법인 및 법무법인에 대한 수수료지급 등으로 인하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합병 완료 전까지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가능한 향후 3년 간의 예상 경상운영 및 외부 용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내역(주4)
설립비용	등기비용 등	15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사무실 세팅 등
스펙상장비용	인수수수료	350	공모액 * 3.5%
	회계감사,기장대리	45	감사 및 세무조정 : 연 1,200만원 * 3년 기장대리 : 연 300만원 * 3년
	상장수수료 등	30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스펙운영비용	임직원급여(주2)	36	사외이사 연 600만원 * 3년 감사 연 600만원 * 3년
	기타 잡비	24	공시담당자 교육비 연간 100만원(3년) 결산공고비용 연간 80만원(3년) IR비용 등
스펙합병비용	기업실사비용	50	
	합병자문수수료	350	
	외부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수수료	100	(주1)
총 계		1,000	

주1)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습니다.

주2)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주3)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감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임원들에게는 상기 보수 외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등 기타 결제 가능 수단을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한도 증액시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운영자금의 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자금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 보고를 한 금액이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 운영자금은 설립 자본 44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0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차. 당사 발기주주들의 지분율은 공모 및 합병과정에서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변경된 주주 구성에 따라 현재의 경영진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이사 3인 및 1인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33조(이사의 임기)에 의하여 3년간이며, 부득이한 사유 이외에는 사직하지 않고 임기동안 그 직을 성실하게 수행할 예정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발기주주들은 당사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모 후 지분율은 전환사채 전환 가정 시 31.51%이며, 향후 임원들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진이 교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번 공모 이후 당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당사의 임원이 변경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의 사업목적인 합병에 관하여 핵심 역할을 담당할 임원이 교체됨으로 인해 합병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3. 기타위험

가. 본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될 수 있으며 공모주식수 4,000,000주, 주당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한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15.75% 수준입니다.

현재 당사의 주주들은 당사의 주식을 1주당 1,000원(액면가 100원)에 취득하였으며, 또한 발기주주가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도 보통주 취득가액과 동일한 주당 1,000원입니다. 향후 진행될 최초 모집 과정에서는 1주당 2,000원에 공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모에 참여하는 주주들의 주당 장부가액은 현재 주주들의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가액으로 인해 희석화 될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이란 공모주주의 주당 주식가치 희석화 정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모주투자자들이 기존 주주들의 투자가액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투자함으로써 기존에 저가 투자분에 의해 주당가치가 희석화되는 비율을 말하며, 지분희석률이 낮을수록 공모투자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희석률은 공모가액이 기존 주주들의 발행가 대비 낮게 할증될수록, 사모발행주식수가 전체 공모후 주식수에 대한 비중이 적을수록 낮게 나타나게 됩니다. 동사의 지분희석률은 **공모주식수**

4,000,000주, 주당 공모확정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75% 수준입니다. 희석비율 산정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원)	
공모		공모전주주(CB전환)		공모가격	가중평균 발행가격	희석비율	
주식수	비율	주식수	비율				
4,000,000	68.97%	1,800,000	31.03%	2,000	1,685	15.75%	

- * 공모비율 = 공모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공모전주주비율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가중평균발행가격 = 총납입금액 / (공모전 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주식수)
- * 총납입금액 = (공모전발행가 × 공모전발행주식수) + (CB전환가능가격 × CB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확정**가액 × 공모주식수)
- * 희석비율 = (공모**확정**가액 - 가중평균발행가격) / 공모**확정**가액

나. 당사는 공모자금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예치자금 반환 시 상환액은 운용자금의 운용방법(운용자산), 신탁자산 및 운용자산의 금리 변동, 기타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본 공모희망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투자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57조에 의거하여 공모자금의 100분에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또는 신탁업자)에게 예치(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실제 공모자금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모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동 예치자금을 정관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공모전 주주가 공모전에 취득한 보통주 및 전환사채를 제외하고 주주(다만, 공모전 주주 등이 최초 주권 공모 이후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함)에게 주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만, 예치자금 반환 시 상환액은 운용자금의 운용방법(운용자산), 신탁자산 및 운용자산의 금리 변동, 기타 수수료의 변동 등에 따라 본 공모희망가액보다 낮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 투자손실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의 예치자금 반환에 관한 정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 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은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에 대한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에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예치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되므로, 예치된 공모자금에 손실이 갈 수 있습니다.

다. 당사의 상장에정주식수 **4,440,000주 중 90.09%에 해당하는 4,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당사의 상장예정주식수 4,440,000주 중 90.09%에 해당하는 4,000,000주는 상장직후 유통 가능하나, 현재 동사 발기주주의 소유주식 440,000주 및 전환사채(전환가능주식수 1,360,000주)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기일 후 6개월간(단, 증권의 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 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한국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당사의 계속보유의무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보유의무자 현황 : 보통주 및 전환사채]

(단위 : 주)

구분	성명 (회사명)	청구일 현재	의무보호예수 주식수	보호예수기간	관계
보통주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400,000 (90.91%)	400,000 (90.91%)	상장일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 간	발기주 주
	수성자산운용(주)	20,000 (4.55%)	20,000 (4.55%)	상장일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 간	발기주 주
	한화투자증권(주)	20,000 (4.55%)	20,000 (4.55%)	상장일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 간	발기주 주
전환사 채	수성자산운용(주)	480,000천원	480,000천원	상장일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 간	발기주 주
	한화투자증권(주)	880,000천원	880,000천원	상장일 ~ 합병신주상장일 후 6월 간	발기주 주

주1)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주식 및 전환사채는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않기로 함

라.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동사는 미상환 전환사채 잔액 1,360백만원이 존재하며, 동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은 1,000원, 총 전환가능 주식수는 1,360,000주입니다. 동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 동사의 주가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동사의 공모전 주주인 수성자산운용(주) 및 한화투자증권(주) 은 1,360백만원의 동사 전환사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전 주주의 주식 등은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월간(단, 증권의발

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등(전환사채 포함)은 당해 주권상장일로부터 합병기일 후 1년간) 보호예수 대상 이기에 매각이 제한되나, 동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가 희석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동사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자	2017년 03월 07일
권면총액	1,3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신주상장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2017.03.07.~2022.03.06))
전환비율 및 가액	100% /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수성자산운용(주) 480,000,000원(35.29%), 한화투자증권(주) 880,000,000원(64.71%)

비 고	<p>[전환가액의 조정]</p> <p>1.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p> <p>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p> <p>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p> <p>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p> <p>3.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p>
-----	--

주) 전환사채 전환 및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수정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회사가 기업인수목적 회사로서 행사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서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들이 취득한 공모 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동 주주등간 계약서에 의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인수한 발기인전환사채와 관련하여 회사가 금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해산되는 경우 이외에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다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소유한 전환사채는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상기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되면 주가가 희석될 수 있는 점,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당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는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또한 행사가 제한 됩니다.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당사의 주식 또는 전환사채를 인수한 투자자는 주주간 계약을 통해 합병 대상법인과 합병승인 안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받기주주들이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으며,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취득하게 되는 주식에 대하여 합병대상법인과 합병과 관련하여 채권자 이의를 제기하거나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들이 취득한 공모 전 발행주식 및 받기인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사의 설립일 이후 현재까지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주,%)

주주명	보통주		전환가능주식수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한화투자증권(주)	20,000	4.55	880,000	64.71	900,000	50.00
수성자산운용(주)	20,000	4.55	480,000	35.29	500,000	27.78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400,000	90.91	-	-	400,000	22.22
합계	440,000	100.00	1,360,000	100.00	1,800,000	100.00

바.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예비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은 정부 또는 금융위원회가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본 증권신고서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또한 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증권신고서상의 발행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금융감독원의 공시심사 과정에서 정정사유 발생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일 이후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에 자산, 부채, 현금흐름표 또는 손익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없습니다.

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화투자증권이 증권인수 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의 대표주관회사로서, 본 공모과정에서 공모 미달이 된 물량에 대해서는 총액인수를 할 책임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 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제24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 승인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 ① 금융기관(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그 금융기관과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기관(이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고 동일계열 금융기관이나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그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동일계열 금융기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등)

- ③ 법 제24조제4항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 ④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 2.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IV.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

본 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2호 마목에 따라 본 공모주식 인수인이 해당 공모주식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 장의 작성 주체는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므로 문장의 주어를 "인수인" 또는 "한화투자증권(주)"로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동사" 또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로 기재하였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분석의견은 인수인이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및 자료에 기초하여 본 건 공모주식의 코스닥시장 상장 및 그 과정에서의 공모예정가액의 제시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주)의 분석의견은 기업실사 과정을 통해 인수인으로서의 판단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 주관적 판단입니다. 그러나, 한화투자증권(주)가 투자자에게 본 건 공모주식에의 투자 여부에 관한 조언 또는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화투자증권(주)가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증권신고서 상에 중요사항의 허위기재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책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본 장에 기재된 동사의 분석의견 중에는 예측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정보에 대한 실제결과는 여러가지 요소들의 영향에 따라 애초에 예측했던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측정보와 관련하여 투자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증권신고서 처음 부분에 기재된 "예측정보에 관한 유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평가기관

구분	증권회사(분석기관)	
	회사명	고유번호
대표주관회사(분석기관)	한화투자증권(주)	00148610

2. 평가의 개요

가. 개요

기업실사(Due Diligence) 결과를 기초로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기명식 보통주식 4,000,000주를 총액인수, 모집하기 위하여 동사의 지분증권을 평가함에 있어 정관, 재무상태표 및 최근 감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진의 경력사항 및 전문성, 합병대상 산업군의 산업동향, 유사회사의 주가 등 주식가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분석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나. 기업실사 이행상황

(1) 기업실사 참여자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정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동사의 사업성, 수익성, 경영성, 재무안정성 등에 대한 Due-Diligence를 실시하였는 바, 실사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대표주관회사 참여자

소속	성명	직책	담당업무
Coverage사업부 IB Advisory센터	곽종근	부장	SPAC 실사 총괄
	박충용	대리	SPAC 실사 담당
	강승연	대리	SPAC 실사 담당

(나) 발행회사 참여자

성명	직책	담당업무
홍진우	대표이사	경영 총괄
이세호	기타비상무이사	경영 총괄
황재필	사외이사	경영 자문

(2) 기업실사 세부일정 및 주요내용

구분	일자	실사내용
대표주관계약 체결	2017.03.03	1. 대표주관계약 체결
기업실사를 위한 사전 회의	2017.03.06	1. 실사 및 예비심사 청구 관련 준비사항 요청
		2. 발행사 경영전반에 관한 내용 검토
		3. 기업실사 범위 및 방법 협의
		4. 이사회 의사록, 주총 의사록, 내부통제 관련 검토
기업실사 1차	2017.03.07	1. 설립 및 재무관련 사항 검토
		2. 외형요건 검토
		3. 임원 경력 및 자격 충족 여부 검토
		4. 정관 검토 (정관필수기재사항 기재여부 등)
		5. 전환사채 발행사항 검토
		6. 공모 주식수 등 협의
기업실사 2차	2017.03.08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2. 재무상태 및 관련자료 확인
		3. 자본금 변동 내역 검토

		4. 주요 주주 지분 변동 사항 검토
		5. SPAC의 집합투자업자 적용 배제 요건 검토
		6. 공모전 주주등의 권리행사 제한에 관한 사항 검토
		7. 예치자금의 주주에 대한 반환사항 검토
		8. 핵심이슈 사항 확인
		9. 영업위험평가
기업실사 3차	2017.03.09	1.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작성 점검
		2. 대표주관회사 종합의견 작성 및 검토
		3. 최대주주등 소유주식 보호예수
		4. 상장예비심사 청구일 전 재무제표 확인
		5.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첨부서류 준비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2017.03.10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실사 4차	2017.04.18	1. 이사회 의사록 및 주총 의사록 내용 검토
		2. 사규 제 개정 내역 검토
		3. 증권신고서 작성

3. 기업실사결과 및 평가내용

가. 경영성

(1) CEO의 자질

홍진우 대표이사는 20년 이상의 장기간 업계에서 축적하여온 Network 와 금융관련업무 수행경험을 바탕으로 당사의 설립목적인 비상장법인 기업인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도덕성 및 적합성에 있어 CEO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성실히 대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코스닥시장 상장 및 우량 기업과의 성공적인 합병과 더불어 홍진우 대표이사는 경영자로서 필요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2) 인력 및 조직 경쟁력

동사는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M&A, 투자업무 등 기업금융 경력이 풍부한 인력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으며, 향후 동사의 상장 및 합병 추진에 있어서 관련 전문성 및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임원 현황]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담당 업무	소유 주식수
----------------	--------------	-------	----------	-----------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홍진우 (69.08.01)	'16.11~ : 수성자산운용 상무이사 재직 '07~16: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04~07: 농협중앙회 공제보험기획부(현,농협생명) '95~04: SK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등 '95 : 중앙대 경영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경영총괄	-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이세호 (76.09.21)	공인회계사 '16.07~: 한화투자증권 IB '13~16: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M&A팀 '10~13: HMC증권 IB '09~10: 신영증권 IB '07~08: 제일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03~07: 대신증권 IB '03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경영총괄	-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황재필 (71.04.03)	'15.08~: Corea Investment 상무이사 재직 '14~15: NH은행 PE단 PEF운용 '99~14: 현대증권 PIT팀 '99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 '96 :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졸업	경영자문	-
감사 (비상근/등기)	전성배 (73.08.19)	'15.10~ :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변호사 '13~ : 계약심의위원회위원, 청렴감사위원회 위원 '13~'17: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12~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간사 '09~ : 한국산학연중합연구재단 자문변호사 '08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03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석사 졸업	감사	-

당사 임원의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성명	수행연도	M&A 및 IPO 관련 업무 내용
홍진우	2016년	제이엔케이히터, 아이씨디 등 전환사채 투자 및 하나마이크론 블록딜
	2007년 ~ 2015년	유진투자증권 신탁상품 MMT 1조원 이상 운용 하이일드메자닌공모주 랩어카운트 운용 하이일드스팩 랩어카운트 운용
	2004년 ~ 2007년	농협중앙회 국고채, 회사채 등 자산운용 및 경제, 금융시장 등의 분석업무 수행
	1995년 ~ 2004년	SK투자신탁운용MMF 1.5조원, 시가형 1조원 등 채권관련 펀드 운용
이세호	2017년	한화엠지아이스팩 합병상장
	2015년	금호고속, 대우증권 인수금융
	2014년	원방테크, ADT캡스 인수금융
	2013년	금호중금 매수자문
	2011년	부스타, 화진, HMCIB제1호스팩 상장
	2008년	미주씨앤아이 합병비율 평가
	2007년	아이썸, 블랙미디어 기업인수 실사, 미광콘택츠렌즈 합병비율 평가

	2007년	현우산업 상장
	2005년	비아아이엠티, 동일산업 상장
황재필	2013년	KG케미칼, 매일유업, KG이니시스 BW투자
	2012년	팅크웨어, 동성화학 BW투자
	2011년	현진소재, 루멘스, 태웅 BW 투자
	2010년	동성화인텍 보통주 및 우리산업 RCPS 투자
	2009년	시노펙스 및 한진P&C BW 투자
	2008년	한국콜마 CB투자
	2007년	흥국쌍용화재 CB 투자

(3) 경영의 투명성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송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자 등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등 부당한 자금거래 발생 내역이 없습니다. 또한 동사는 기타 채무보증, 담보제공, 불공정한 매출·매입거래 등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향후에도 부당한 자금거래 방지를 위해 주요 거래사항에 대해 이사회 승인 후 집행처리 하고 주주총회에서 동 사항을 보고함으로써 내부통제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동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내부건제장치의 일환인 이사회운영 규정, 내부회계관리규정, 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제정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및 회계처리, 공시정보 등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투명하고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집행기관인 이사회에 대하여 감사기관으로 1인의 비상근 감사를 두고 있으며, 사외이사 1인을 두어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4) 경영의 독립성

동사는 대표이사 및 이하 등기 이사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이사회가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사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안건 및 결의 과정상 의사결정 독립성을 훼손 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발기인인 주주들은 정관 및 주주간 협약에 의하여 합병 관련 의결권이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제한이 있습니다.

한편, 기타 주주와 관련된 주요한 사안은 상법의 규정에 의해 주주총회를 통해 의결되고 있으며, 동사는 청구일 현재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없어 독립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배구조의 독립성은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설립시점부터 사외이사를 두어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사의 지배구조는 투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나. 재무상태

(1) 재무성장성

동사는 다른 법인과외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로서 합병 이외의 영업 행위를 영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향후 상장을 위한 공모과정에서 공모자금이 유입되는 것 외에 특별한 재무성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한국증권금융(주)에 100% 예치되어 운용됩니다.

(2) 재무안정성

동사는 2017년 03월 0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공모자금 예치율 100%로 예치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동 자금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인출할 시를 제외하고 인출할 수 없는 구조이며, 합병 성공 시 합병준속법인의 시설자금,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만약 합병에 실패하여 회사를 해산할 경우 공모주주에게 주권 보유비율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모집 전 투자자금은 회사의 운영, 상장 및 합병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모진행을 통하여 약 100억원의 자기자본 증가가 예상되며 관련 규정상 추가 차입이 불가능하고, 공모자금의 100%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동사의 재무적인 안정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며, 합병대상법인의 재무적인 안정성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재무자료의 신뢰성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설립일(2017.02.28)	한길회계법인	적정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한길회계법인을 동사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한 바, 설립일의 개시 재무상태표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었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동사의 외부감사인인 한길회계법인 및 외부감사용역을 수행한 회계사들은 동사 및 동사의 공모 전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으며, 이들은 공인회계사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되어지며,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 대하여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 및 감사 관계인이 회사의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외관상, 실질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공모가격에 대한 의견

가. 평가결과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의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확정**가액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구분	내용
주당 공모 확정 가액	2,000원
확정공모가액 결정방법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의 상황 등을 감안한 후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하여 확정공모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상기 주당 공모희망가액은 동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절대적 평가액이 아닙니다.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 동사의 재무에 대한 위험, 동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산업에 대한 위험, 주식시장상황의 변동가능성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공모가격의 산출방법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상기와 같이 제시된 공모희망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격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다. 적정공모가격 결정을 위한 참고사항

공모가격은 발기인 및 대표주관회사의 협의에 의한 가격이며, 공모규모는 동사 설립 이후 대표주관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주식시장 상황 및 주관회사의 자금유치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장되는 기업과는 달리 사업연혁 및 재무성과 등이 없기 때문에 동사의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가 상대적으로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상장기업들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의 영업실적을 기반으로 그 기업가치를 평가받지만, 합병 이외의 사업목적은 영위하지 않는 동사의 경우에는 비교할 수 있는 영업실적 등이 없기에 공모가격 및 공모규모의 결정이 보다 자의적일 수 있습니다.

동사의 공모전주주들은 주당 1,000원에 투자하였으며, 대표주관회사인 한화투자증권(주)는 공모예정가격(2,000원)을 바탕으로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하였으며, 확정공모가격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사와 한화투자증권(주)가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현재 주된 평가기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 상장된 유사회사의 영업실적 혹은 재무상태와의 비교방법을 동사에 적용할 수는 없으나, 동사의 유사회사로 볼 수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들이 과거 공모를 통해 상장된 바 있으므로 이들 회사의 공모가격 결정방법을 참조하여 동사의 공모가격을 제시하였습니다. 과거 공모를 거쳐 상장된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공모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회사 공모가 현황]						
(단위: 원)						
구 분	액면가	발행가		공모가 배수 (주1)	공모금액 (백만원)	희석률 (주2)
		공모전	공모시			
대우증권그린코리아	1,000	1,000	3,500	3.5배	87,500	16.7%
미래에셋제1호	500	500	1,500	3.0배	20,000	12.2%
현대드림투게더	100	2,000	6,000	3.0배	20,000	16.3%
동양밸류오션	500	5,000	10,000	2.0배	45,000	9.1%
우리1호	5,000	5,000	10,000	2.0배	35,000	11.1%
신한제1호	100	2,000	5,000	2.5배	37,500	12.6%
히든챔피언제1호	1,000	1,000	2,000	2.0배	30,000	12.9%
신영해피투모로우제1호	500	500	1,000	2.0배	19,700	5.8%
한화SV명장제1호	100	2,000	5,000	2.5배	20,000	12.0%
대신증권그로쓰알파	1,000	1,000	2,000	2.0배	20,000	14.6%
SBI&솔로몬드림	500	500	1,250	2.5배	22,500	14.3%

한국투자신성장1호	200	1,000	2,200	2.2배	23,100	13.7%
교보KTB	100	2,000	4,000	2.0배	25,000	14.8%
HMCIB제1호	100	1,000	2,000	2.0배	23,560	11.5%
이트레이드1호	100	1,000	2,000	2.0배	19,000	13.5%
키움제1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9.9%
부국퓨처스타즈	500	1,000	2,000	2.0배	11,800	17.6%
하나그린	100	2,000	4,000	2.0배	20,000	8.4%
하이제1호	500	2,000	4,000	2.0배	27,000	9.1%
동부티에스블랙펠	100	1,000	2,000	2.0배	22,500	9.1%
IBKS스마트SME	500	500	1,000	2.0배	20,000	9.0%
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애플스	100	1,000	2,500	2.5배	20,000	12.0%
우리기업인수목적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키움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5,000	11.8%
케이비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4,800	12.8%
유진기업인수목적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하나머스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5,000	14.3%
미래에셋제2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엔에이치기업인수목적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케이비제3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9.35%
신한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500	11.1%
교보위드스팩	100	1,000	2,000	2.0배	7,800	18.05%
현대에이블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4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1.24%
유안타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1,000	13.35%
IBKS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KTB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이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국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5%
동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하나머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2.12%
우리에스엘스팩	100	1,000	2,000	2.0배	4,000	16.70%
엘아이시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5,000	14.30%
교보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케이비제5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20,000	17.11%
하나머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4,500	15.40%
현대드림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케이비제6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30,000	12.50%
NH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8,540	12.74%
골든브릿지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7,000	11.96%
에스케이제1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10,000	14.80%

케이비제7호기업인수목적	100	1,000	2,000	2.0배	8,000	19.70%
케이티비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한화에이스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8,200	15.25%
하나머스트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6.9%
유진에이씨피씨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대우에스비아이스팩1호	100	1,000	2,000	2.0배	5,500	17.6%
한화엠지아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대우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
미래에셋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400	10.96%
한화에이씨피씨스팩	100	1,000	2,000	2.0배	13,500	13.51%
엔에이치스팩5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
대신밸런스제1호스팩	100	1,250	2,000	1.6배	10,000	3.92%
하이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500	13.05%
엔에이치스팩7호	100	1,000	2,000	2.0배	8,400	13.8%
하나머스트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7,000	15.7%
이베스트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골든브릿지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800	12.71%
엔에이치스팩8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키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3,000	9.65%
유안타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2.50%
한화에이스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3,250	10.45%
SK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8%
엘아이지이에스스팩	100	1,000	2,000	2.0배	5,000	14.28%
케이비 제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10.94%
미래에셋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100	11.39%
교보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6,000	12.50%
현대드림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80%
교보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200	13.05%
케이티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2,500	14.30%
한국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3,000	11.76%
유진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11,500	15.15%
엔에이치스팩9호	100	1,000	2,000	2.0배	15,500	12.20%
신영스팩2호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동부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300	14.55%
IBKS제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8,000	16.65%
이베스트스팩3호	100	1,000	2,000	2.0배	8,000	13.65%
현대드림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36%
키움스팩4호	100	1,000	2,000	2.0배	20,000	10.00%
에이치엠씨3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0.00%
골든브릿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500	14.29%
하나금융7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4,000	11.11%

동부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2.70%
대신밸런스제2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0,000	7.63%
케이비제9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27,000	9.09%
IBKS제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3,500	12.75%
하이에이아이1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200	14.06%
미래에셋제5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9,000	11.86%
한국4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1.54%
교보비엔케이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16.65%
하나금융8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2,000	8.33%
케이비제10호스팩	100	1,000	2,000	2.0배	10,000	14.29%
아이비케이에스지엠비스팩	100	1,000	2,000	2.0배	11,000	13.40%

주1) 공모가 배수 = 공모시 발행가 ÷ 공모전 발행가

주2) 공모주주 추가희석을 = (공모시 발행가 - 가중평균 발행가) ÷ 공모시 발행가

이에 시장상황 및 기타 고려사항 등을 반영하고, 공모전주주와 공모주주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모전주주등의 투자단가인 1,000원의 2배 수준인 2,000원을 공모 **확정**가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모 **확정**가액을 바탕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 **하였으며**, 확정공모가액은 동 수요예측 결과 및 주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화투자투자증권(주)와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가 협의하여 결정 **하였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돕기 위하여 동사의 공모희망가액에 따른 희석비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모가 (2,000원)
희석비율	15.75%
가중평균 발행가	1,685원
총 납입금액	9,800,000,000원
총 발행주식수	5,800,000주

주1) 산식은 아래와 같음

▷ 희석비율= (공모희망가격-가중평균발행가격)÷공모희망가격

▷ 가중평균발행가격= 총납입금액÷총발행주식수(CB 전환 가정)

▷ 총납입금액=(공모전발행가×공모전발행주식수) + (CB행사가액×전환가능주식수) + (공모희망가격×공모주식수)

▷ 총발행주식수= 공모전발행주식수+ 전환가능주식수+ 공모주식수

V. 자금의 사용목적

1.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한 자금조달 내역

가. 자금조달금액

구분	금액
총 공모금액(1)	8,000,000,000
발행제비용(2)	230,000,000
순수입금 [(1)-(2)]	7,770,000,000

2. 자금의 사용목적

가. 자금의 사용계획

금번 공모를 통하여 조달한 금액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발행제비용과 당사의 운영자금은 설립자본금 4.4억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충당할 예정입니다.

구분	금액	비고
예치자금	8,000,000,000	공모자금의 100% 예치
계	8,000,000,000	

주) 총 공모금액은 공모희망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나. 발행제비용의 내역

구분	금액	계산근거
인수주선수수수료(주1)	175,000,000	공모금액 X 3.5%
상장수수료	2,500,000	상장심사수수료
상장수수료	400,000	신규상장수수료
등록세	2,000,000	증자 자본금의 0.4%
교육세	400,000	등록세의 20%
등기비용	6,000,000	증자 자본금의 1.2%
공고비용	10,000,000	-
기타비용	33,700,000	IR비용, 투자설명서 인쇄비등
합계	230,000,000	

- 주1) 신규상장 공모 후 인수수수료의 50%, 합병등기일 후 50% 수령 예정
- 주2) 발행제비용 내역은 확정공모가액 2,000원을 기준으로 작성
- 주3) 상기 발행제비용은 본 공모금액에서 사용하지 않고, 당사의 설립자본금과 전환사채 발행금액에서 사용할 예정임

나. 공모자금 사용방법

(1) 공모자금 예치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공모자금의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의 100%인 **80억원**을 주권의 주금납입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된 자금은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합병 후 존속법인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당해 주식의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될 예정이며,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에는 공모주주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운영자금

공모금액은 전액 예치할 예정이며, 설립자본금 4.4억원과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억원 등 총 18.0억원에서 운영자금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예상가능한 향후 3년 간의 예상 정상운영 및 외부 용역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금액	내역(주4)
설립비용	등기비용 등	15	등록세, 공증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사무실 세팅 등
스팩상장비용	인수수수료	350	공모액 * 3.5%
	회계감사,기장대리	45	감사 및 세무조정 : 연 1,200만원 * 3년 기장대리 : 연 300만원 * 3년
	상장수수료 등	30	상장수수료, IR비용 등
스팩운영비용	임직원급여 (주2)	36	사외이사 연 600만원 * 3년 감사 연 600만원 * 3년
	기타 잡비	24	공시담당자 교육비 연간 100만원(3년) 결산공고비용 연간 80만원(3년) IR비용 등
스팩합병비용	기업실사비용	50	
	합병자문수수료	350	

	외부평가법인 및 법무법인수수료	100 (주1)	
총 계		1,000	

주1) 법률자문 및 회계자문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습니다.
주2) 이사 및 감사의 보수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지급 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주3)
대표이사	-	-	-
기타비상무이사	-	-	-
사외이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감사	연 6,000,000원	월 500,000원	-

*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임원들에게는 상기 보수 외에 개인이 사용 가능한 법인카드 등 기타 결제 가능 수단을 제공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3) 상기 임원보수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한도 증액시 이사회 및 임시 주주총회 개최가
필요합니다. 또한, 당사의 운영자금관리규정에 따라, 상기 운영자금의 보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는, 자금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여 대표이사 및 이사회 구성원에 보고를 한 금액이 집
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4) 상기 운영자금은 설립 자본 440백만원 및 전환사채 발행금액 1,360백만원에서 지출할
계획이며, 금번 공모를 통해 유입된 자금은 전액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3) 공모자금의 예치·신탁에 관한 사항

당사는 2017년 03월 09일 한국증권금융(주)와 체결한 예치약정에 따라 공모자금 80.0억원
전액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예치약정서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모자금의 예치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예치 기관	한국증권금융(주)	-
예치 예정금액	8,000,000,000원	-
예치 자금의 공모가액 대비 비율	100%	-
신탁 시기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
신탁 기간	코스닥시장에서 최초 모집일로부터 36개월 내	-

[예치약정서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제1조 자금의 예치	<p>갑은 주권(최초 모집 이전에 발행된 주권은 제외한다.) 발행금액의 100%를 주금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을에게 예치하기로 한다.</p>
제4조 예수금의 인출 등	<p>①갑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의 완료 이전에 예수금을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②갑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갑은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을에게 제출한 후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p> <p>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수금을 인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자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합병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금융투자업 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갑이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p>④갑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예수금의 인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인출사유 및 인출 예정 일자를 즉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제3항에 따라 예수금을 인출하는 경우 을은 갑의 주주의 증권거래 계좌에 자금이 이체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 등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예수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다.</p> <p>⑥을이 법원으로부터 예수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한다.</p> <p>⑦을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수금을 지급할 경우 제6항에 따른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이 제외된 예수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하기로 한다.</p> <p>⑧갑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예수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 금액 및 일자를 [별첨 1]의 인출통지서로 즉시 한국거래소에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을의 거래 영업점에서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한다.</p>

제5조
자금의 운용

- ①을은 예수금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하기로 한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 가. 은행
 -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라. 보험회사
 - 마.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바. 증권금융회사
 - 사. 종합금융회사
 - 아.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자.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3.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4.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
 5. 특수채증권의 매수
 6.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 후순위채권 및 주식관련채권 이외의 채권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한 주택저당증권의 매입
 7. 조건부매수. 단 대상증권은 본조 본항에 따라 을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과 신용평가업자로부터 A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을 제외한다)에 한한다.
 8. 「예금자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원본 이상이 보호되는 예금, 그 밖의 금융상품의 가입 또는 매수
 9.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를 초과하는 은행예금의 가입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10. 자본시장법 제152조 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채권(주식 관련 사채권은 제외한다)의 매수
 1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 중 영업용순자본비율 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비율의 기준미달로 인한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적기시정조치가 유예중인 금융기관을 포함한다)이 아닌 금융기관으로서 을이 채무불이행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자금의 대출(자본시장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에 한한다)
 1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13.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리관련 장내 또는 장외파생상품(다만, 장외파생상품 거래 상대방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국내은행에 한한다.)
 14. 자금 운용결과 취득한 증권(환매조건부로 매입하거나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포함한다)의 대여(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적격금융기관 중 국내금융기관에 대한 대여에 한한다)
- ②을이 제1항 제14호에 따라 증권을 대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취득한 증권 종목별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2. 증권 대여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증권을 재매수하는 행위
 3. 담보로 취득한 증권을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이외의 목적으로 매도

	<p>하는 행위</p> <p>③을은 자금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갑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이 자금의 운용현황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을은 관련자료를 즉시 제공하기로 한다.</p>
제6조 이자의 지급	<p>①이자는 갑의 일별 최종잔고에 의한 월적수에 제2항의 이율을 곱한 후 365일로 나누어 산출하기로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이율은 해당월 CD 91일물 평균금리 * 로 하되, 다음 각호의 전액 인출사유 발생의 경우에는 인출사유 발생일 전일까지는 해당기간의 CD 91일물 평균금리를, 인출사유 발생일부터 인출일 전일까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 * 를 각각 적용한다.</p> <p>1. 합병등기의 완료</p> <p>2.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목의 사유</p> <p>* 해당월 CD 91일물 평균금리 = [해당월 금융투자협회가 영업일별로 고시하는 CD 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의 합계] / [해당월 영업일수] (소수점이하 6째자리에서 반올림)</p> <p>**[해당 기간 영업일별 한국은행 기준금리 합계] / [해당기간 영업일수] (소수점이하 6째자리에서 반올림)</p> <p>③을은 제2항의 금리를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이를 갑에게 통지하기로 하고, 통지발송일로 10일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갑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p> <p>④이자는 매월별로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익월 제3영업일에 예수금에 원가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되, 예수금의 전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인출일의 전일까지의 이자를 정산하여 지급한다.</p>
제8조 담보제공 및 양도제한	<p>갑은 예수금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p>

주1) "갑" :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 "을" : 한국증권금융(주)

VI.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에 관한 사항

대표주관회사는 금번 공모에 의하여 모집 및 매출되는 증권에 관하여 시장조성 또는 안정조작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2. 예치자금의 지급

가. 예치자금 지급사유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에 공모금액의 100%를 납입기일 다음 영업일까지 예치할 계획입니다. 당사는 예치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1)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2) 당사가 해산하여 예치자금을 투자자 (최초 주권모집 전에 증권을 취득한 자는 제외)에게 지급하는 경우

나. 지급절차

(1)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당사는 합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한국증권금융(주)에 제출한 후 예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사유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한국증권금융(주)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가) 합병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전의 한도 내에서 인출하는 경우

(나)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해산하는 경우로서 당사가 예치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3) 상기 (2)에 따라 예치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한국증권금융(주)는 당사 주주의 증권거래계좌에 자금이체 되도록 명의개서대행기관 명의의 계좌로 예치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증권금융(주)가 법원으로부터 예치자금에 대한 압류, 추심, 전부명령을 송달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에 그 사실을 통지할 예정입니다.

다.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당사가 해산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정관규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지게 됩니

다. 먼저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된 자금을 공모주주에게 분배하며, 동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할 경우 발행가액까지 예치자금 이외의 잔여재산에서 분배합니다.

이 경우 공모전주주는 그 취득분(주식 및 전환사채 포함)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모전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해당)

또한 사채권 보유자 등도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회사의 해산시 상법상 채권회수절차에 따라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라. 1주당 지급예상금액

[1주당 지급예상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되는 가정]	
-	당사가 납입기일부터 36개월 이후 해산하는 경우
-	예치이율 1.20% 가정

당사가 주권모집에 따른 납입기일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하게 되는 경우, 당사의 공모에 참여한 주주는 다음과 같은 1주당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구분	금액
예치자금(A)	8,000,000,000원
이자율(B)	1.2%
예치기간(C)	36개월
총 반환예정금액(D=A*(1+B)^3)	8,291,469,824
공모주식수(E)	4,000,000주
1주당 반환예정금액(F=D/E)	2,073 원

주) 상기 1주당 반환예정금액은 36개월 동안 변경되는 이자율 및 36개월내 당사가 해산시에 따른 예치기간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모주식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고 예치자금 이외에 해산 당시 당사가 기타 잔여재산을 보유하는 경우, 기타 잔여재산은공모주식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로서 지급되는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주식수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마. 예치자금 지급제한 사유

당사에 대한 소송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여 예치자금을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공모주주를 위한 예치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지급이 제한된 예치자금은 관련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후 잔여액이 있을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에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예치자금을 포함한 당사의 자산은 채무자의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 및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잔여재산이 분배될 수 있으며, 당사의 주주는 당사의 채권자에 비해

재산분배에서 후순위에 해당됩니다.

바. 예치자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당사는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한 공모자금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송 등 우발채무가 발생하였을 공모예치자금에 대하여 압류, 추심,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치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예치자금 지급제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2부 발행인에 관한 사항

I. 회사의 개요

1. 회사의 개요

가. 회사의 법적·상업적 명칭

이 회사는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Hanwha Susung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 LTD.」 (약호 Hanwha Susung SPAC) 라 표기한다.

나. 설립일자 및 존속기간

- 설립일자 : 2017년 02월 28일
- 존속기간 : 최초 모집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다. 본사의 주소, 전화번호

- 본 사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 전 화 번 호 : 02-3772-7318

라. 회사사업 영위의 근거가 되는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
-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마. 중소기업의 해당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대한민국에 대리인이 있을 경우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사.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1) 주요사업의 내용

당사는 한국거래소의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합니다.

목적사업	비고
------	----

<p>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 목적으로 하며 위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p>	<p>정관 제2조 (목적)</p>
---	------------------------

(2) 향후 추진하려는 신규사업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 공시서류작성기준일 현재 계열회사의 총수, 주요계열회사의 명칭 및 상장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차. 상법 제290조에 따른 변태설립사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회사의 연혁

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그 변경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 (여의도동)
- 설립일(2017년 02월 28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사실이 없습니다.

나. 경영진의 중요한 변동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이상 변동)

이사 선임일	내용
2017. 02. 28	발기인 총회에서 대표이사 흥진우, 기타비상무이사 이세호, 사외이사 황재필, 감사 전성배 선임

다. 최대주주의 변동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최대주주의 변동 사실이 없습니다.

라. 상호의 변경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상호 변경 내역이 없습니다.

마. 회사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과 결과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회의, 회사정리절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바. 회사가 합병등을 한 경우 그 내용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합병과 관련된 사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 회사의 업종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 의거하여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년 02월 28일 설립된 회사이며, 업종의 변화 또는 주된 사업의 변화 사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

당사는 설립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기업분할, 영업양수도 등 경영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의 발생이 없습니다.

3. 자본금 변동사항

가. 자본금 변동 사항

(단위 : 주,원)

주식 발행일자	발행형태	발행한 주식의 내용				
		종류	수량	주당 액면가액	주당 발행가액	비고
2017.02.28	기명식	보통주	440,000	100	1,000	설립자본금

나. 전환사채

구분	내용
사채의 종류	제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일자	2017년 03월 07일
만기일자	2022년 03월 07일
권면총액	1,360,000,000원
만기보장수익율	0%
전환사채 배정방법	사모

전환청구기간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이후(신주상장일로부터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 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2018.03.07~2022.03.06)
전환비율 및 가액	100% / 1,000원
전환대상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
전환사채별 주요 보유자	수성자산운용(주) 480,000,000원(35.29%), 한화투자증권(주) 880,000,000원(64.71%)
전환비율	전환을 신청한 사채권면금액의 100% (2 이상의 사채권으로 전환청구 시 에는 그 권면금액의 합산금액)를 전환가격으로 나눈 주식수를 전환주식수 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한다. 이 때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단, 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 청구는 할 수 없다.
전환권 및 의결권 행사 제한 사항	전환사채 인수자인 수성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는 상법 제522조 에 따른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시에 회사 주식의 최초 모집 이전 에 취득한 주식등(해당 주식등에 부여된 전환권등의 권리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 하거나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 (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이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함
보호예수기간	사채권자”는 “본 계약”에 따라 취득한 “본 사채”를 “발행회사”의 최초모 집 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시점 혹은 그 이전부터 합병 대상기업과의 합병 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 시에는 “사채권자” 중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이 이 취득한 “본 사채”는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 원에 보호예수 하여야 한다.

비 고

[전환가액의 조정]

1. “사채권자”의 전환청구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말하고, 비상장법인으로서 주식공모를 한 경우에는 그 공모가 가액으로 하되 공모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해 조정사유 발생일 직전의 위 사채의 전환가격을 시가로 한다. 이하 같다)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행사가격 혹은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text{조정후 전환가격} = \text{조정전 전환가격} \times \{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times \text{1주당발행가액} \div \text{시가}) \} \div (\text{기발행주식수} + \text{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청구가 이루어져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 또는 그 주식수 이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가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3.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주) 상기 전환사채 인수자인 수성자산운용(주),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날까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였음. 상장 이후 전환사채를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주주등간계약서에 따라 전환한 주식 모두를 합병대상기업과의 합병후 합병신주상장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단, 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이 소유한 공모전 발행주식등은 합병기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하여야 함

다.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현물출자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의 총수 등

가. 주식의 총수

당사의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주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의 총수는 440,000주입니다.

(단위: 주)

구 분	보통주식	종류주식		합 계
		우선주	소계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00	-	-	100,000,000
발행한 주식의 총수	440,000	-	-	440,000
미발행주식수 (모집할 주식수 포함)	99,560,000	-	-	99,560,000
상장예정주식수	5,440,000	-	-	5,440,000

나. 자기주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보통주외의 주식

해당사항 없습니다.

5. 의결권 현황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수는 440,000주이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0.44%에 해당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440,000주입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구 분	주식의 종류	주식수	비 고
발행주식총수(A)	보통주	440,000주	-
의결권 없는 주식수(B)	-	-	-
정관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C)	-	-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D)	-	-	주)

의결권이 부활된 주식수(E)	-	-	-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F=A-B-C-D+E)	보통주	440,000주	-

주)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는 타 법인과의 합병과 관련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과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이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사의 발기인 간에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 등에 의거하여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들이 취득한 공모 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6.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I. 사업의 내용

1. 합병에 관한 사항

당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별도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가. 합병의 개요

(1) 합병 형태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14호에 따라 합병을 유일한 목적으로 회사가 설립되어 있어 내용상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4조에 따라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당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본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권비상장법인인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주)이며, 흡수합병하는 합병대상법인은 해산하게 됩니다. 당사는 상장예비심사청구서의 승인을 득한 이후 코스닥시장에 상장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상장 이후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는 합병대상법인과 합병 이후 상장폐지 계획은 없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 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 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편, 당사는 당사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에 따라 합병대상법인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합병과 관련된 사항]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

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2) 합병 일정

당사는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2항에 따라 합병과 관련하여 현재 합병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향후 당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는 이사회결의를 할 경우 관련 공시를 하고 합병상장예비심사청구를 하는 등 법규에서 정해진 방법에 따라 합병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된 사항 및 일정은 추후 공시를 통해 상세하게 공지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사는 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및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에 근거하여 최초 모집한주권의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해야 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 만료 6개월 이전까지 합병을 위한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합병결의에 따른 법규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상장법인과의 합병에 한함)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지정사유 미해소시 상장이 폐지됩니다. 따라서 당사는 관련 법규상 정해진 기한 내에 합병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3) 합병가액의 산정 및 합병대가

합병기일 현재 합병대상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 대하여 합병대상 회사의1주당 법규에서 정한 합병가액 및 합병비율 산정에 따라 당사의 보통주를 교부하게 됩니다. 또한 합병신주 배정시 발생하는 단주는 우선 당사가 취득하고 합병신주가 추가 상장되어 거래되는 초일의 증가를 기준으로 해당 주주에게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당사와 주권상장법인과 혹은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가액 산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그리고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4조 부터 제8조에 따라 분석할 예정입니다.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및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 산정 산식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가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증가는 증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증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증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증가
다. 최근일의 증가

(나) 주권비상장법인과의 합병

1)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증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증가는 증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증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증가로 합니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증가
다. 최근일의 증가

다만, 상기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하되, 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산정방식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부터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할 예정입니다.

2)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1)의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당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④ 영 제176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법 제165조의5제2항에 따라 매수하는 주식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
2. 영 제6조제4항제14호다목에 따른 투자매매업자가 소유하는 증권(기업인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영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증권을 포함한다)을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1년간 계속 소유할 것
3.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영 제176조의5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협의하여 정한 가격을 영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합병가액 및 상대가치와 비교하여 공시할 것

당사는 당사와 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 시, 시장의 눈높이에 맞는 보다 적절한 합병가액의 산출을 통한 합병주총에서의 승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어 합병가액의 산출 시에 있어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나. 합병대상회사에 관한 사항

(1) 합병대상회사의 업종 선정 배경

당사는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합병대상회사의 업종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나, 정관상 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산업군의 우량 중소 비상장기업을 Target으로 대상회사를 발굴한 후 합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사의 정관에 명시된 당사의 합병을 위한 중점사업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여,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1. 소프트웨어/서비스
2. 모바일/게임
3.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4. 신재생에너지
5. IT 및 반도체
6. 소재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가) 신재생에너지

우리나라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 석탄, 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가 포함되며 재생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에너지,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는 온실 가스 감축, 화석 에너지 대체,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국가 발전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치열한 시장 경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주요지표 예상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지표	2008년	2013년	2018년
국내생산액(천억원)	5	327	1,936
수출액(억달러)	3	282	1,731
부가가치(천억원)	1	78	571

자료: 국회도서관 ‘신성장동력 한눈에 보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계획 및 법령을 살펴보면,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제시한 이래, 2008년 9월 ‘신재생에너지 중심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2011년 ‘그린에너지전략 로드맵’ 등이 잇달아 발표되었고, ‘녹색인증제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KETEP 및 KEPCO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심의 기업 및 산업육성 정책은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 확보라는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장확대를 위한 정부의 견인정책은 기업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 바이오제약(자원) ·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산업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의약품 및 서비스로 재가공, 생산하는 산업입니다. 기존의 일반 합성의약품이 화학적 공법으로 물질 합성을 통해 약품을 제조해왔다면, 최근 각광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Biologics)은 생명공학을 통해 조작된 생체조직을 활용하여 약품 물질을 만들어내어 합성의약품에 비해 중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에 더 효과적이며 부작용이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R&D 투자로 기초 원천기술의 개발에 집중함과 동시에 CRO, CMO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 및 기업 육성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내 기업이 세계 첫 번째, 두 번째 및 세 번째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그 시판 허가를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의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하기도 하는 등 바이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가파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첨단의료기기산업은 IT와 BT, 그리고 NT 등의 기술융합 제품군 생산과 u- health 서비스 등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의 바이오기술 경쟁력과, 우수한 연구인력, 그리고 제약, 정밀화학, 전자, 소재개발 및 CRO, CMO, 헬스케어 등의 관련 산업 및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어 전략적 투자시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Global Healthcare)는 해외환자 유치와 해외수출을 합친 개념으로 글로벌 저성장시대 헬스케어산업이 차세대 먹거리인 신성장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고령화와 소득 증가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 보건산업 시장규모는 2011년 기준으로, 10조 달러로 이 중 헬스케어 시장은 5조 7,0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8%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140대 국정과제의 9번째(‘보건, 고령친화 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주요사업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인 지원,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3년 7월 글로벌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조직인 국제의료분부를 신설, 글로벌 의료 한류확산을 비전으로 해외환자유치 지원사업과 병원해외진출 지원사업, 중동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2020년 해외환자 100만명 유치 및 의료기관 200개소 해외진출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가

고 있습니다.

(라) IT융합시스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이용하여 주력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차세대 핵심부품인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기를 기반으로 산업분야에 다양하게 접목하는 산업이 IT융합시스템 산업으로 미래 핵심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IT 융합시스템산업과 관련하여 2008.7. ‘New IT전략’, 2009.9. ‘IT KOREA 미래전략’, 2010. ‘IT융합 확산전략’ 및 2012. ‘IT 융합 2단계 확산전략’ 등의 주요 정책을 제시, 실행하였고, 그 결과 IT 융합시스템이 타산업과의 융합에 의하여 기존 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등 주력 IT제품의 세계시장에서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력 제조업의 능력과 최고의 IT산업을 보유하고 있어 IT융합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앞으로도 주력산업에 IT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도적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외에도 핵심원천기술력을 가지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잠재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군을 주요관심 대상 업종으로 하여 성공적인 합병을 통해 유망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수익 창출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다.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 효과

(1) 회사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제5항, 회사의 정관제59조제2호의 해산사유에 따라 최초로 모집한 주권의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산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정관상 회사의 해산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9조(회사의 해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마목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제5항 제2호에 따라 이 회사는 다음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를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2. 최초 주권모집에 따른 주금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이 회사 주권이 자본시장법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

(2)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당사가 관련 법규 및 정관에 정한 합병기한 내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여 해산을 하게 될 경우 당사의 정관 제60조 및 공모전주주등간에 체결된 주주등간 계약서의 정함에 따라 예치자금의 반환 및 기타

그 외 잔여재산에 대하여 분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관상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된 사항]

제60조(예치자금등의 반환 등)

- ① 제59조에 따라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공모전 주주는 주식 등 취득분에 대하여 예치자금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공모전 주주가 최초 주권공모 이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예치자금 등은 주식(제1호 본문에 따라 공모전 주주가 취득하고 있는 주식등은 제외함)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각호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하되, 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게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2. 제1항 및 본 항 제1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발행가액(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며, 이하 본 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공모주식에 대하여 위 제1항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 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호에 따라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보유 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 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이후에도 남은 기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주식을 의미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 ③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이 회사의 발기인 및 공모전 주주는 제외)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이 회사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전 주주(발기주주)의 경우 상법상 절차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가 이루어질 경우, 전환사채 인수금액에 따라 발기인별 원금 회수율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모전 주주(발기주주)간의 '주주등간 계약서'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잔여재산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4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하기 이전에 해산되는 경우 회사의 잔여재산의 분배와 관련하여 예치자금 등에 대해서는 공모전 발행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하여 회사에 대하여 잔여재산분배청구 또는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청구 등 여하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5.5 회사가 최초모집 이후에 관련 법령, 본 계약 또는 회사의 정관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본 계약의 당사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은 다음의 순서 및 방법에 따라 결정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산인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 통지하도록 한다.

(가)예치자금 등은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이하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그 보유 공모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하여 지급한다. 예치자금 등의 분배 결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여 잔여재산분배액의 지급(세후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제5.5조에서 같다)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공모전 발행 주식 등의 주주(본 계약의 당사자들)에 대하여는 예치자금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청구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위 (가)에 의한 지급 후에 남은 회사의 재산은 상법 제3편 제4장 제12절(청산)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한다. 다만,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분배되며, 회사에 대한 채권은 주주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에 우선하여 변제를 하되, 발기인전환사채의 상환권은 공모전 발행 주식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와 동일한 순위로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의 행사가 제한된다.

(1)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공모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분배할 잔여재산은 위 (가)에 따라 지급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주주에 분배되는 금액이 당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우선적으로 해당 공모주식의 주식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2)위 (가) 및 위 (나)(1)에 따라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 회사에 남은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발행가격(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과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발행가격으로 본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보유 주주에게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수(전환사채에 대하여는 전환시 발행될 주식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다만, 위 (가)에 따라 공모주식의 보유주주에게 지급된 금액이 공모주식의 발행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 잔여재산은 본 (2)에 따라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보유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한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공모전 발행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3)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공모전 발행 주식등과 공모주식을 포함하여 회사가 발행한 모든 발행주식을 말하며, 이하 “모든 발행주식등”이라 한다)의 발행가격에 달하는 금액 또는 위 (나)(2)의 초과비율에 달할 때까지 잔여재산이 분배된 후에도 회사에 남은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잔여재산은 회사의 모든 발행주식등의 발행가격의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라. 합병대상회사의 선정기준 및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1) 합병대상회사 선정기준

당사는 합병대상기업 선정에 대해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등을 만족하는 회사를 합병대상회사로 선정하여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대상회사의 경영성, 사업성, 수익성, 성장성, 기술력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당사 정관상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각호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또는 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관상 합병대상법인과 관련된 사항]

정관 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

- 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
- 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
 - 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
 - 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 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
 - 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
- 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

정관 제63조(합병을 위한 중점 산업군)

이 회사는 상장 이후 합병을 진행함에 있어 성장성이 높고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거나 동 산업에 부품 및 장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을 중점으로 합병을 추진한다.

- 1. 소프트웨어/서비스
- 2. 모바일/게임
- 3.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 4. 신재생에너지
- 5. IT 및 반도체
- 6. 소재
- 7. 기타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산업

아울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의4에 따른 합병대상회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요건
설립 후 경과연수	설립 후 3년 이상 경과 및 계속적으로 영업하고 있을 것 (벤처 및 기술성장기업은 미적용)
자기자본	자기자본 3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15억원, 기술성장기업은 10억원)

자본상태	최근 사업연도 현재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최근 사업연도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발생
이익규모 등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기자본이익율 10% 이상 또는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 (벤처기업은 자기자본이익률 5%, 당기순이익 10억원 이상이며, 기술성장기업은미적용)
감사의견	최근 사업연도 감사의견 적정
주식의 양도제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없을 것
규모요건	합병대상법인 규모가 기업인수목적회사 공모예치자금의 80% 이상일 것
질적요건	기업의 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및 주주이익침해여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심사

(2)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

당사는 관련법규 및 정관 제58조(회사의 합병)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병대상회사에서 제외되는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상 합병대상회사 제외기준과 관련된 사항]

<p>제58조(합병대상법인의 규모 및 합병제한)</p> <p>① 합병대상법인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산정된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예치자금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합병대상법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 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자산총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p> <p>② 주권의 최초 모집 이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거나 잠정적으로 정해진 합병대상법인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p> <p>③ 이 회사는 상법 제524조에 따른 신설합병의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4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이 회사가 소멸하는 방식으로 합병할 수 없다.</p> <p>④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회사와는 합병할 수 없다.</p> <p>1. 이 회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 목의 증권(의결권 없는 주식에 관계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이하 "공모전주주등"이라 한다)</p> <p>2.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회사</p> <p>가.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다목에 따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이 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나.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다.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에 속하는 개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라. 이 회사의 임직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p> <p>3. 이 회사의 공모전 주주등의 자본시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대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p> <p>4. 이 회사 또는 공모전 주주등과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임직원을 겸직하였던 회사</p> <p>⑤ 본 조 제4항 제2호의 소유주식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39조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권리행사 등으로 발행될 수 있는 주식수를 포함하며, 공모전 주주등의 주식수 산정시에는 당해 주주등의 계열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수를 포함한다.</p>

마.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및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1) 주주총회의 합병승인 요건

당사가 합병을 하기 위해서는 합병계약서에 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득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출석주주 의결권의 2/3 이상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그 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발기인 등의 의결권 제한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중인 주주(발기인)들은 당사 및 각 주주등간 체결한 주주등간 계약서에 따라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들이 취득한 공모 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 계약서의 의결권 제한 내용]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공모전 발행주식 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1) 주식매수청구 절차

당사 주권의 최초 모집 후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당사의 주주(최초 모집 이전 주주 제외)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당사 및 당사주주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 합병반대의사의 통지: 주주총회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의사 통지

(나) 주식매수청구: 주주총회일부터 20일내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

(다) 주식매수청구 서류 제출: 주식매수청구의 내용을 거래소에 문서로 신고

(라) 대상주식의 매수: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 해당주식을 매수

(마) 매수한 주식 처분: 해당 주식을 매수한 날부터 3년 내

(2) 주식매수가격의 결정

주식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와 해당 법인간의 협의로 결정합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당사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해서도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가격을 산술평균한 값 (= (A + B + C) / 3)

- A.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증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 B.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증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 C.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증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가격

단,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의발행및 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고 주권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동 요건에 맞추어 주식매수가격을 공모가격 이상으로 하여야합니다.

사.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합병추진시 회계법인에 대한 합병관련 실사 및 평가 용역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합병관련 법무법인에 대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자문용역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용역제공기관이 정해진 바는 없으며, 추후 합병 진행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대상자문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 시점에서 예상하고 있는 외부용역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기업실사비용	50	회계법인
합병 자문수수료	350	M&A 자문기관
법률자문 수수료	50	법무법인
회계자문 수수료	50	회계법인
합계	500	

주) 상기 용역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대방은 없으며, 상기 비용 또한 예상비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합병추진 운영비용에 관한 사항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금액 17억원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합병추진 운영에 관한 비용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한편, 당사의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

수료의 사용한도는 5억원입니다. 당사는 동 규정을 통해 회사 운영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

① 회사운영자금의 인출에 대해서는 아래 항목에 국한하여 처리한다.

- 회사의 설립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코스닥시장 상장(공모 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② 회사운영자금의 사용한도는 아래와 같다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회사의 설립 및 코스닥시장 상장(공모포함)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1)	400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2)	600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 (주3)	500
합 계	1,500

주1) 인수수수료(정액 3.5억원) 등

주2) 급여(연간 총 12백만원), 기장대리(연간 총 3백만원), 외부감사수수료 및 IR비용 등

주3) 법률자문 50백만원, 회계자문 50백만원, 합병자문 350백만원, 기업실사 50백만원 등

③ 단, 회사가 해산하기 전에 본조 제2항의 항목별 사용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초과 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Ⅲ.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재무정보

가. 요약재무현황

(단위 : 원)

구분	전환사채 발행일 (2017.03.07)	설립일 (2017.02.28)
감사인(감사의견)		(적정)
자산총계	1,798,925,000	440,000,000
유동자산	1,798,925,000	440,000,000
비유동자산	-	-
부채총계	1,187,117,797	1,791,600
유동부채	2,948,840	1,791,600
비유동부채	1,184,168,957	-
자본총계	611,807,203	438,208,400
자본금	44,000,000	44,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94,208,400	394,208,400
이익잉여금(결손금)	(2,232,240)	-
기타자본항목	175,831,043	-
영업수익	-	-
영업비용	2,232,240	-
영업이익(손실)	(2,232,240)	-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손실)	(2,232,240)	-
당기순이익(손실)	(2,232,240)	-

주) 전환사채 발행일 기준의 재무정보는 당사 자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

2. 연결재무제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연결재무제표 주석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재무제표

가.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구분	금액	
	전환사채 발행일 (2017.03.07)	설립일 (2017.02.28)
자산		
유동자산	1,798,925,000	440,000,000
현금및현금성자산	1,798,925,000	440,000,000
자산총계	1,798,925,000	440,000,000
부채		
유동부채	2,948,840	1,791,600
비유동부채	1,184,168,957	-
전환사채	1,184,168,957	-
전환권조정	-	-
부채총계	1,187,117,797	1,791,600
자본		
자본금	44,000,000	44,000,000
주식발행초과금	394,208,400	394,208,400
전환권대가	175,831,043	-
이익잉여금(결손금)	(2,232,240)	-
미처분이익잉여금(미처리결손금)	(2,232,240)	-
자본총계	611,807,203	438,208,400
자본과부채총계	1,798,925,000	440,000,000

주) 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의 재무정보는 당사 자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구분	금액 (설립일 ~ 전환사채 발행일)	
영업수익		-
영업비용		2,232,240
판매비와관리비		2,232,240
지급수수료	2,194,000	
세금과공과금	48,240	
영업이익(손실)		(2,232,240)
금융수익	-	-
이자수익	-	-
기타금융수익	-	-
금융원가	-	-
이자비용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2,232,240)
법인세비용		-

당기순이익(손실)		(2,232,240)
기타포괄손익		-
총포괄손익		(2,232,240)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손실)		
계속영업기본주당이익(손실)		(5)
희석주당이익(손실)		
계속영업희석주당이익(손실)		(4)

주) 당사 자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

다. 자본변동표

(단위 : 원)

구분	자본금	주식발행 초과금	기타 자본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리결손금)	자본 합계	
2017.02.28 (설립일)	44,000,000	394,208,400	-	-	438,208,400	
자본의 변동	포괄 손익	당기 순이익(손실)	-	-	(2,232,240)	(2,232,240)
	지분의 발행		-	-	-	-
	전환사채의발행 (전환권대가)		-	175,831,043	-	175,831,043
	자본 증가(감소) 합계		-	175,831,043	(2,232,240)	173,598,803
2017.03.07 (전환사채 발행일)	44,000,000	394,208,400	175,831,043	(2,232,240)	611,807,203	

주) 당사 자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

라. 현금흐름표

(단위 : 원)

구분	금액 (설립일 ~ 전환사채 발행일)	
영업활동현금흐름	-	(1,075,000)
지급수수료 현금 유출	(1,075,000)	-
투자활동현금흐름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
재무활동현금흐름	-	1,800,000,000
자본금납입	440,000,000	-
전환사채의 발행	1,360,000,000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1,798,925,000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1,798,925,000

주) 당사 자체 결산 자료를 바탕으로 기재

5. 재무제표 주석

하기 재무제표 주석은 설립 감사보고서(2017년 02월 28일) 주석 내용입니다.

1. 일반 사항

한화수성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이하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여 2017년 2월 28일에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56(여의도동)입니다.

회사의 존속기간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로 주권을 모집하여 주금을 납입받은 날로부터 36개월까지로 합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주요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400,000	90.91
수성자산운용(주)	20,000	4.55
한화투자증권(주)	20,000	4.55
합계	440,000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회사가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1) 재무제표 작성기준

1) 회계기준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 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2)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금융상품 등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재무제표는 회사의 기능통화이면서 표시통화인 "원(KRW)"으로 표시되고 있으며, 별도로 언급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KRW)" 단위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2) 회계정책의 변경과 공시

1)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주석공시 순서 등에 대한 일부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생물자산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적용범위에 추가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및 기준서 제1038호 '무형자산': 수익에 기초한 감가상각방법

자산을 사용함으로써 창출되는 수익에 기초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은 명백한 반증을 제공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공시': 투자기업의 연결 예외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는 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면제 가능한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이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업이 아닌 투자자가 투자기업인 관계기업지분을 보유한 경우, 해당 관계기업에 지분법을 적용 시 회계정책을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는 면제를 추가 하였습니다.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기업도 해당 기준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준서 제1111호 '공동약정'

공동약정 중 사업에 해당하는 공동영업에 대한 지분을 취득 하는 경우, 사업결합 회계에 대한 모든 원칙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2-2014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2012 년의 개정사항인 '공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에 의한 추가적인 공시가 기준서 제1034호'중간재무보고'에 따라 요구되지 않는다면 모든 중간기간에 대해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 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되는 할인율 결정시 부채가 발생하는 국가가 아닌, 부채가 표시되는 통화가 중요한 고려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기준서상'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에 공시된 정보'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중간재무제표와

관련 정보간의 상호참조에 대한 요구사항을 추가로 개정하였습니다.

- 기준서 1011호 '건설계약', 기준서 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해석서 2115호 '부동산 건설약정'

수주산업 회계정보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기 위해 수주산업 특유의 회계 추정 및 잠재 리스크 관련 정보를 개별공사별 또는 영업부문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제정·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회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2015년 12월 공표된 금융상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금융상품의 인식과 측정을 규정한 기준서 제 1039호를 대체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은 금융상품의 분류와 측정을 사업모형과 상품의 현금흐름 특성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할 것을 규정하고 해당 분류에 따른 손익인식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손상모형은 기대신용손실과 그 변동을 인식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위험회피회계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위험관리와 일관되도록 부분적인 개정이 반영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고 조기 적용이 허용되며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적 조기적용도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2015년 12월 공표한 수익인식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수익인식 기준인 기준서 제 1018호와 건설계약 수익인식 기준인 제1011호 및 관련 해석서를 대체합니다. 개정된 수익기준서는 현행 수익인식 기준의 위험과 보상 이전 모형을 대체하여 통제의 이전모형에 기초하여 고객과의 계약과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의 산정하고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 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때 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사는 상기에 열거된 제·개정사항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는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유동성이 매우 높은 단기 투자자산으로서 확정된 금액의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가치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다만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의 요구에 따라 즉시 상환하여야 하는 당좌차월은 현금및현금성자산의 구성요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4) 금융상품

1) 금융자산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이나 매도는 매매일 또는 결제일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은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식 이후 매도가능금융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되고, 대여금및수취채권과 만기보유금융자산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되고,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변동은 기타포괄손익에 계상되어 이를 처분하거나 손상을 인식하는 때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됩니다.

회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혹은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한 경우 등으로서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거나 회사가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하지도 아니하고 이전하지도 아니하면서 회사가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2) 금융자산의 손상

회사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손상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를 매 보고기간 말에 평가하고, 최초인식 후 하나 이상의 손상사건이 발생한 결과 손상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며, 그 손상사건이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금융자산(또는 금융자산의 집합)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상각후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하는 금융자산 및 매도가능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금융부채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부채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부채의 최초 인식시점에 그 성격과 보유목적에 따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는 최초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가 아닌 경우 당해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최초인식하는 공정가치에 차감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공정가치로 표시하고 있으며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는 금융부채는 다음의 금융부채를 제외하고는 최초인식 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는 소멸한 경우(즉,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기존 차입자와 대여자가 실질적으로 다른 조건으로 채무상품을 교환하거나 기존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최초의 금융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금융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

회사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면서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5) 전환사채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계약의 실질에 따라 금융부채와 자본으로 각각 분류하고 있습니다. 최초인식시점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는 계약상 정해진 미래현금흐름을 당해 금융상품과 동일한 조건 및 유사한 신용상태를 가지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현금흐름을 제공하지만 전환권이 없는 채무상품에 적용되는 그 시점의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 추정하고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소멸되거나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며, 자본요소인 전환권의 장부금액은 전환사채 전체의 공정가치에서 금융부채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과 관련된 거래원가는 배분된 발행금액에 비례하여 금융부채와 자본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6) 수익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이자수익, 로열티수익 및 배당수익은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으며,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수익을 인식하며,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인식하고, 로열티수익은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하며, 배당수익은 주주로서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7) 법인세

법인세비용(수익)은 당기법인세비용(수익)과 이연법인세비용(수익)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수익이나 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일 회계기간 또는 다른 회계기간에 자본에 직접 가감되는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본에 직접 가감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 결손금과 세액공제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않다면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액시키고 감액된 금액은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그 범위 내에서 환입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상계하고 있습니다.

(8) 주당이익

회사는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보통주에 귀속되는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

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특정 회계기간의 당기순손익을 그 기간에 유통된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으며, 보통주에 귀속되는 금액은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 각각의 금액에서 자본으로 분류된 우선주에 대한 세후우선주 배당금,우선주 상환시 발생한 차액 및 유사한 효과를 조정한 금액입니다.

희석주당이익은 모든 희석효과가 있는 잠재적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9) 중요한 회계추정 및 판단

재무제표의 작성시 경영진은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장부금액 및 우발부채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과 추정 및 가정을 하여야 합니다.보고기간말 현재 이러한 추정치는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 및 추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나 향후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실제 결과와는 중요하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4. 재무위험관리

(1) 재무위험관리요소

회사는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유동성위험과 같은 다양한 재무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회사의 전반적인 위험관리정책은 금융시장의 예측불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재무성과에 잠재적으로 불리할 수 있는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시장위험: 이자율 위험

이자율위험은 미래의 시장이자율 변동에 따라 예금 또는 차입금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이 변동될 위험으로서 이는 주로 변동금리부 조건의 예금과 차입금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이자율위험관리의 목표는 이자율변동으로 인한 불확실성과 순이자비용의 최소화를 추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2) 신용위험

신용위험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현금및현금성자산	440,000,000

3) 유동성 위험

회사는 유동성에 대한 예측을 항시 모니터링하여 차입금 한도나 약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예측 시에는 회사의 자금조달 계획, 약정 준수, 회사 내부의 목표재무비율 및 외부 법규나 법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그러한 요구사항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의 유동성 위험 분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1년 이하	1년 초과~3년 이하	3년 초과
기타금융부채	1,791,600	-	-

(2) 자본위험관리

회사의 자본관리 목적은 계속기업으로서 주주 및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고 자본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최적의 자본구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자본조달비율에 기초하여 자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조달비율은 순부채를 총자본으로 나누어 산출하고 있습니다. 순부채는 총차입금에서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차감한 금액이며 총자본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에 순부채를 가산한 금액입니다.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자본조달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총차입금	-
차감: 현금및현금성자산	(440,000,000)
순차입금(A)	-
자본총계(B)	438,208,400
총자본 대비 차입금 비율(A/B)	- (*)

(*) 순차입금이 부(-)의 금액이므로 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5. 범주별 금융상품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금융상품의 범주별 분류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합계
현금및현금성자산	440,000,000	440,000,000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자산이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원)

재무상태표 상 부채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	합계
기타금융부채	1,791,600	1,791,600

주)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공정가치로 측정된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6. 현금및현금성자산

회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금액
기업자유예금	440,000,000

7. 기타금융부채

회사의 기타금융부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내용	금액
----	----	----

미지급금	법인설립 등록세 등	1,791,600
------	------------	-----------

8.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회사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주, 원)

구분	금액
발행할 주식수	100,000,000
발행한 주식수(보통주식)	440,000
1주당 액면금액	100
보통주 자본금	44,000,000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394,208,400

9.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의 특칙

(1)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발행금액의 100분의 9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권의 주권 납입일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동 예치 또는 신탁한 금전을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인출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회사는 최초 모집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 예치할 금액은 없습니다.

(2)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시 합병대상법인의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회사가 예치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이어야 하고, 회사 설립시 주주 및 경영진과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이 될 수 없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3)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납입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회사가 발행한 주권이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최초 주권 모집에 따른 주권납입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의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회사가 상장폐지되는 경우에는 해산하고 예치자금 등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회사는 최초 주권 모집 이후 자금차입,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채무증권 발행 등 기타 기업인수목적회사에 대하여 금지되는 재무활동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10. 보고기간종료일 이후 발생한 사건

(1). 회사는 2017년 3월 3일자 이사회 결의에 의거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습니다.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및 전환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채의 명칭	제 1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종류	무기명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사채의 액면금액	1,360,000,000원		
발행일	2017년 03월 07일	만기일	2022년 3월 7일
표면이자율	0%	만기보장수익률	0%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가격	액면가 100원을 기준으로 주당 1,000원 (저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에 의하여 필요시 전환가격 조정함)		
전환청구기간	사채의 발행일 후 1년이 경과한 이후로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사채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 까지		
인수인	수성자산운용(주) 480,000,000원(35.29%), 한화투자증권(주) 880,000,000원(64.71%)		

6. 기타 재무에 관한 사항

가. 차입, 채무보증 및 채권발행제한 등 재무규제에 대한 사항

당사는 정관에 의거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정관 제61조(차입 및 채무증권 발행금지)

- ① 회사는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담보제공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회사는 채무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주권의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혹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하여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전에는 상법 제513조 또는 제516조의2에 따른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나. 비용지출 관련 한도에 대한 사항

당사는 자금운영규정 제5조(회사운영자금 관련 사항)에 의거, 회사의 합병과 관련된 비용 및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여 사용한도를 설정하였으며, 동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사용에 대해 이사회 의 승인을 득하도록 하였습니다.

다. 비용지출이 예치자금 등에 미치는 영향

당사는 공모금액의 100%를 신탁업자(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이므로, 공모전 주주의 투자 금액 중 일부를 합병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상기 비용 지출이 예치자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IV. 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가.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당사의 제1기 설립 당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한길회계법인이 수행하였습니다. 상기 감사시 감사인에 의해 표명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습니다.

(1) 회계감사인의 명칭

제1기(설립시점)
한길회계법인

(2)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사업연도	감사인	감사의견
설립일(2017.02.28)	한길회계법인	적정

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 회계감사인의 변경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V.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1. 이사회에 관한 사항

가.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권한 내용

구분	내용 (이사회 운영규정)	비고
권한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

<p style="text-align: center;">부의사항</p>	<p>제10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재무제표의 승인 (4) 정관의 변경 (5) 자본의 감소 (6) 회사의 해산, 합병, 회사의 계속 (7) 주식의 소각 (8) 이사, 감사의 선임 및 해임 (9)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0) 주식배당 결정 (11)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2) 이사?감사의 보수 (13)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4)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선임 및 해임 (8)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9)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0)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1) 직원의 채용계획 및 훈련의 기본방침 (12) 급여체계, 상여 및 후생제도 (13) 기본조직의 제정 및 개폐 (14)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5) 회사 운영자금 관련 회사의 자금운영규정내 정해진 한도금액을 초과하여 사용되어야 할 경우 3. 재무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에 관한 사항 (2) 중요한 계약의 체결 (3)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결손의 처분 (5) 신주의 발행 (6) 준비금의 자본전입 4. 이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타회사의 임원 겸임 5. 기 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p style="text-align: center;">-</p>
---	--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가 인정한 사항 3.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	--

(2) 이사후보의 인적사항에 관한 주총전 공시여부 및 주주의 추천여부

당사는 설립을 위한 발기인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였으며, 설립일 이후부터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추가로 이사가 선임된 사실은 없습니다. 향후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정관 규정에 의거하여 이사 선출을 위한 주주총회의 소집 및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사의 선출 목적과 이사 후보에 대한 정보를 주주총회 성립 2주전에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주주에게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의 이사 중 주주제안권에 의거 추천되었던 이사후보는 없습니다.

	<p>정관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p> <p>③ 회사는 제1항의 소집통지서에 주주가 서면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후보자와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와 해당회사와의 최근 3년간의 거래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⑤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	--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및 구성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4) 사외이사 현황

성명	주요경력	최대주주등과의	결격요	비고
----	------	---------	-----	----

		이해관계	건 여부	
황재필 (71.04.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 8 ~ 현재: Corea Investment 상무 - 2014. 6 ~ 2015.08: NH은행 PE단 PEF 운용 - 2014. 1 ~ 2014.06: 현대증권 일산지점 - 2006. 7 ~ 2014. 1: 현대증권 PI부 투자팀장 - 2000. 1 ~ 2006. 7: 현대증권 인사팀 - 1999. 3 ~ 2000. 1: 현대증권 압구정지점 	없음	결격사 항 없음	-

당사의 사외이사 황재필은 상법 제382조제3항 내지 동법 제542조의8제2항에서 정의하는 사외이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외이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분	해당여부	비고
	사외이사	
상법 제382조 제3항 각호	황재필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X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상법 제542조의8제2항 각호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	X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상장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X	
---	---	--

(5)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사회 규정의 주요내용

구분	내용
권한사항	<p>제3조(권한)</p> <p>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p>
운영절차	<p>제6조(종류)</p> <p>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p> <p>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로 나누어 연 4회 의장이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개최한다.</p> <p>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p> <p>제8조(소집절차)</p> <p>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수 있다.</p> <p>제9조(결의방법)</p> <p>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p> <p>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p> <p>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권한위임사항	제5조(의장) ① 이사회 의장은 대표이사 사장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대표이사 사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대표이사 사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회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참석
1	2017.02.28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정관 승인의 건 이사, 감사 선임의 건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이사3명 감사1명
2	2017.03.03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5영업일 이내에 금융투자협회 신고)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전환사채 발행의 건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2017.03.09	사내규정 제정의 건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4	2017.05.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조정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이사 3명, 감사 1명

3)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주요활동내역

회차	개최일자	사외이사 참석인원	비고
1	2017.02.28	1명 (1명)	발기인 총회
2	2017.03.03	1명 (1명)	이사회
3	2017.03.09	1명 (1명)	이사회
4	2017.05.26	1명 (1명)	이사회

(4) 이사회내의 위원회 구성현황과 그 활동내역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이사회내의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감사제도에 관한 사항

가. 감사기구 관련 사항

(1) 감사위원회(감사) 설치여부, 구성방법 등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정관 제45조에 의거하여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비상근감사 1명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2) 감사위원회(감사)의 감사업무에 필요한 경영정보접근을 위한 내부장치마련 여부

당사는 당사의 감사규정 제7조 ②항 내지 ③항에 따라 회사내에 모든 정보에 접근할 권한,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을 요구할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감사직무 규정 제7조의 2항 및 3항]

제7조(권한)

②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회사 내 모든 정보에 대한 사항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3. 창고, 금고, 장부 및 관계서류, 증빙, 물품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감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

③ 감사는 각 부서의 장에게 임직원의 부정행위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지체 없이 보고토록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위원회(감사)의 인적사항

성명	주요 경력	결격요건 여부	비고
전성배 (73.08.19)	'15.10~ :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변호사 '13~ : 계약심의위원회의원, 청렴감사위원회 위원 '13~'17: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12~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간사 '09~ : 한국산학연종합연구재단 자문변호사	해당사항 없음	-

당사의 감사인 전성배는 상법542조의10의 규정에서 정의하는 감사의 결격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회(감사)의 결격요건 검토 Check-List]

구분	해당여부	비고

	감사위원회 (감사)	
상법 제542조의10	전성배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X	
5.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 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비속	X	
6.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다만, 이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이사는 제외한다.	X	
7.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X	
8.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및 피용자	X	

나. 감사위원회(감사)의 주요활동내역

개최일자	의 안 내 용	가결 여부	비고
2017.02.28	1)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가결	-
2017.03.03	1) 대표주관계약 체결의 건 2) 외부감사인 선임의 건 3) 기장대리인 선임의 건 4) 전환사채 발행의 건 5)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가결	-
2017.03.09	1) 사내규정 제정의 건 2) 코스닥시장 상장 동의의 건	가결	-

2017.05.26	제1호 의안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신주 발행 조정의 건 제2호 의안 : 총액인수계약 체결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 건	가결	-
------------	---	----	---

3.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1) 집중투표제의 배제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정관 제32조에서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p>정관 제32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p> <p>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수로 하여야 한다.</p> <p>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나. 서면투표제 또는 전자투표제의 채택여부

당사는 정관 제28조에서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 전자투표제는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p>정관 제28조(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p> <p>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p> <p>②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p>

다. 소수주주권의 행사여부

당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사실이 없습니다.

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사항

당사의 설립을 위하여 2017년 02월 28일 각 발기인간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의하여 주권의최초 모집 전에 발행한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발기인)들은 합병승인 안건에 대하여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합병승인 안건에 반대하는 경우에도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공모전주주들이 취득한 공모 전 발행주식 및 발기인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주등간계약서]

5.3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회사가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행하는 다른 법인과의 합병을 위하여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임하여 해당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한다)에서 본 계약 당사자가 보유하는 주식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한다)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며,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른 합병반대주주가 가지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이는 회사가 그 주권을 최초로 모집하기 이전에 본 계약 당사자들이 취득한 회사의 주식 및 전환사채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VI. 주주에 관한 사항

1.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

가. 최대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구 분	성 명	관 계	주식의 종 류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			
				설립일 (2017.02.28)		신고서 제출일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에스에스아이인베 스트먼트(주)	본인	보통주	400,000	90.91	400,000	90.91
합 계				400,000	90.91	400,000	90.91

나. 최대주주의 주요 경력

(1) 회사의 개황

- 회사명 :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 대표자 : 김주한
- 설립일 : 2015년 6월 1일
- 결산기 : 3월말
- 업종 : 기타투자업
- 주제품 : 유상증권투자
- 당사와의관계 : 발기주주

(2) 주요 연혁

- 서울투자수성이음PEF의 메디포스트 전환사채 투자

2. 최대주주의 변동 현황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주식의 분포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단위 : 주, %)

주주명	보통주		전환가능주식수		합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에스에스아이인베스트먼트(주)	400,000	90.91	-	-	400,000	22.22
수성자산운용(주)	20,000	4.55	480,000	41.45	500,000	27.78
한화투자증권(주)	20,000	4.55	880,000	58.55	900,000	50.00
합계	440,000	100.00	1,360,000	100.00	1,800,000	100.00

4. 주식사무

가. 정관에 규정된 신주인수권의 내용

제11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 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에 주주 외의 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1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3호의 방식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나.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구분	내용
결산기	12월 31일
정기주주총회	매 영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주명부폐쇄시기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권의 종류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500주권, 1,000주권, 10,000주권 (8종)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공고게재신문	전자공고 또는 매일경제신문

5. 주가 및 주식거래실적

당사의 주권은 설립일 이후 한국거래소 또는 해외의 조직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적이 없습니다.

6. 공모전주주등의 권리행사 등 제한 사항

가. 공모전 발행된 주권의 매각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1조 제1항 제6호에 의거하여 해당 주권의상장일부 터 주권비상장법인 또는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과 합병신주상장일 후 6개월간 주식등의 매각 이 제한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3조 제4항에 따른 합병가치 산출시에는 투자매매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가 소유한 주식 등은 합병신주상장일 이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 지 양도 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나. 합병승인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제한

당사의 공모전주주는 상법 522조에 따른 주주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예탁결제원에 위 임하여 해당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식수(서면투표 주식수를 포함)에서 공모전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수를 뺀 주식수의 의결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찬성 및 반대(기권 및 무효를 포함)의 비율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다.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제한

주주등간 계약서 등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은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상법 제522조의3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라. 예치자금등의 반환대상 제외

당사의 정관 제60조에 따라 당사의 공모전주주등의 최초 공모 전 취득한 주식등에 대하여예치자금등 의 반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VII.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1. 임원 및 직원의 현황

가. 임원의 현황

선임일	직책명 (상근/등기)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17.02.28	대표이사 (비상근/등기)	홍진우 (69.08.01)	'16.11~ : 수성자산운용 상무이사 재직 '07~16: 유진투자증권 고객자산운용팀 '04~07: 농협중앙회 공제보험기획부(현,농협생명) '95~04: SK투자신탁운용 채권운용팀 등 '95 : 중앙대 경영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17.02.28	기타 비상무이사 (비상근/등기)	이세호 (76.09.21)	공인회계사 '16.07~ : 한화투자증권 IB '13~16: 농협은행 투자금융부 M&A팀 '10~13: HMC증권 IB '09~10: 신영증권 IB '07~08: 제일회계법인, 이촌회계법인 '03~07: 대신증권 IB '03 :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학사 졸업
17.02.28	사외이사 (비상근/등기)	황재필 (71.04.03)	'15.08~ : Corea Investment 상무이사 재직 '14~15: NH은행 PE단 PEF운용 '99~14: 현대증권 P팀 '99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석사 졸업 '96 : 중앙대학교 응용통계학과 학사 졸업
17.02.28	감사 (비상근/등기)	전성배 (73.08.19)	'15.10~ : 법률사무소 그들로 대표변호사 '13~ : 계약심의위원회의원, 청렴감사위원회 위원 '13~'17: 서울산업진흥원 자문변호사 '12~ : 서울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간사 '09~ : 한국산학연종합연구재단 자문변호사 '08 :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03 :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석사 졸업

나. 임원의 M&A 및 IPO 등 관련 주요 경력사항

당사의 임원 주요경력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원성명	수행연도	M&A 및 IPO 관련 업무 내용
홍진우	2016년	제이엔케이히터, 아이씨디 등 전환사채 투자 및 하나마이크론 블록딜
	2007년 ~ 2015년	유진투자증권 신탁상품 MMT 1조원 이상 운용

		하이일드메자닌공모주 랩어카운트 운용 하이일드스팩 랩어카운트 운용
	2004년 ~ 2007년	농협중앙회 국고채, 회사채 등 자산운용 및 경제, 금융시장 등의 분석업무 수행
	1995년 ~ 2004년	SK투자신탁운용MMF 1.5조원, 시가형 1조원 등 채권관련 펀드 운용
이세호	2017년	한화엠지아이스팩 합병상장
	2015년	금호고속, 대우증권 인수금융
	2014년	원방테크, ADT캡스 인수금융
	2013년	금호종금 매수자문
	2011년	부스타, 화진, HMCIB제1호스팩 상장
	2008년	미주씨앤아이 합병비율 평가
	2007년	아이썸, 블랙미디어 기업인수 실사, 미광콘택츠렌즈 합병비율 평가
	2007년	현우산업 상장
	2005년	비아이이엠티, 동일산업 상장
황재필	2013년	KG케미칼, 매일유업, KG이니시스 BW투자
	2012년	팅크웨어, 동성화학 BW투자
	2011년	현진소재, 루멘스, 태웅 BW 투자
	2010년	동성화인텍 보통주 및 우리산업 RCPS 투자
	2009년	시노펙스 및 한진P&C BW 투자
	2008년	한국콜마 CB투자
	2007년	흥국쌍용화재 CB 투자

다. 임원의 자격 충족여부 검토

항 목	해당여부			
	홍진우 대표이사	이세호 기타비상무이사	황재필 사외이사	전성배 감사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X	X	X	X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X	X	X	X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이하 이 조에서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 또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의 법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X	X	X	X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X	X	X	X

5.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사람	X	X	X	X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그 조치를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영업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취소 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조제1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X	X	X	X
7.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X	X	X	X
8.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X	X	X	X

당사 임원의 경우 상기에 열거되어 있는 기업인수목적 임원에 대한 자격제한사항(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관련하여 임원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있습니다.

라. 임원의 변경을 예방하기 위한 수단

당사의 임원 중 사외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및 기타비상무이사는 발기인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임원 변경의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일부 임원의 사임시 적임자를 즉시 임원으로 선임하여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마. 임원의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 지분보유 내역

당사 임원 중 다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내역은 없습니다.

바. 임원의 다른 회사(기업인수목적회사 포함) 겸임 및 겸직 현황

성명	다른 회사명	주요사업	직위	직무	재직기간	보유 주식	지분율	비고
----	--------	------	----	----	------	----------	-----	----

홍진우	수성자산운용 (주)	투자기관	상무이사	투자/자문	2016.11~현재	-	-	-
이세호	한화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	차장	IPO	2016.07~현재	-	-	-
황재필	Corea Investment(주)	투자기관	상무이사	투자/자문	2015.08~현재	-	-	-
전성배	법무사무소 그들로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변호사	2015.10~현재	-	-	-

사.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당사의 임원은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직하고 있으나, 영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합병만을 목적으로 하는 명목회사의 특성상 타 회사 임직원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는 경영진이 겸직을 하고 있는 회사 또는 당사 경영진 및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최대주주이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합병대상법인에서 제외되므로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은 없습니다.

아. 종업원의 현황

당사는 현재 이사 3명, 감사 1명 이외에 종업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2. 임원의 보수 등

가. 이사(사외이사 포함) 및 감사위원회 위원(감사)의 보수현황

구분	지급총액	주총승인금액	1인당평균 지급액	비고
대표이사	-	연 2,000만원	-	-
사외이사	연 600만원		연 600만원	-
감사	연 600만원	연 1,000만원	연 600만원	-

당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 2,000만원과 감사의 보수한도 1,000만원을 결의하였으며 동 한도 내에서 이사 및 감사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사외이사에게 연간 600만원, 감사에게 연간 6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임원에게는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퇴직시에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계획입니다.

나. 임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VIII.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IX.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1. 공모전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공모전주주등과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공모전주주등과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4. 공모전주주등과의 거래

당사는 공모전주주등인 한화투자증권(주)와 코스닥시장 상장업무와 관련한 대표주관회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한화투자증권(주)로부터 한화투자증권 빌딩 일부에 대하여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받아 사용중에 있습니다.

X.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및 주주총회 현황

가. 공시사항의 진행,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

일자	구분	안건	결의내용
2017.02.28	발기인 총회	1) 의안 창립사항 보고에 관한 건 2) 정관 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298조 소정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5) 의안 본점설치 장소 결정의 건	승인
2017.03.09	임시주주총회	1)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2)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3) 임원퇴직금규정 승인의 건	승인

2. 우발채무 등

가. 중요한 소송 사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수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채무보증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무인수약정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그 밖의 우발채무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의 발행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현황 등 그 밖에 사항

가.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작성기준일 이후 발생한 주요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마.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당사는 현재 예금에 관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예금자 보호에 관한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가 코스닥상장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는 주금납입일 익일에 한국증권금융(주)에 예치할 예정입니다.

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규제 적용배제요건 충족 여부]		
집합투자업 적용배제 요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의2)	총족여부	세부내역
	총족	
① 주권(최초 모집 전 발행주권 제외) 발행자금의 90%이상을 주금납입일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금융회사신탁업자에 예치신탁할 것	총족	공모금액 100% 예치 예정 (한국증권금융과 예치약정 체결)
② 예치신탁자금등은 합병대상법인과 합병등기 완료전 인출 또는 담보로 제공하지 않을 것	총족	정관 제57조에 기재
③ 발기인 중 1인이상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일 것	총족	한화투자증권(주) (2016년 12월말 자기자본 8,134억원)
④ 임원이 금융투자업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총족	결격사유 해당 없음

⑤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90일 이내 증권시장에 상장할 것	충족	주금납입일에 상장신청 예정
⑥ 최초로 모집한 주권에 대한 주금납입일부터 36개월 이내 합병등기를 완료할 것	충족	정관 제3조에 기재
⑦ 주권 최초 모집 전에 합병대상법인이 정하여 지지 않을 것	충족	정관 제58조에 기재
⑧ 해산사유 발생시 예치신탁자금등을 주주에게 주권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	충족	정관 제60조에 기재
⑨ 발기인인 지분증권 투자매매업자는 기업인수 목적회사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	충족	주)

주)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식 등의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사. 기업인수목적회사에서의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및 의무

(1) 금융투자업자의 역할

당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금융투자업자인 한화투자증권(주)는 당사의 기본구조를 디자인하고 발기인으로 참여할 자를 섭외하였으며,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회사 설립에 필요한 각종 실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상장 이후 성공적인 합병이 이루어지도록 합병대상법인 물색 및 제반 합병업무를 수행하고 합병 이후에도 기업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컨설팅 또는 경영컨설팅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2) 금융투자업자의 요건 및 의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만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말 현재 한화투자증권(주)는 자기자본 8천억원 이상으로서, 동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발기인인 금융투자업자는 기업인수목적회사의 발행주식등 발행총액의 5% 이상을 소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 발행예정총액은 **98억원**(공모전 주주의 주식 및 전환사채 투자금액 18억원, 공모예정금액 **80억원**)이고 한화투자증권(주)의 주식 등 투자금액은 총 9억원(발행총액의 **9.18%**)으로 동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아. 합병 등의 사후정보

해당사항 없습니다.

【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